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특수교육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I. 인천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	1
II. 인천 특수교육의 기저 .....	2
1. 인천교육 지표 및 시책 .....	2
2. 2010 인천교육 역점 사업 .....	2
3. 2010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추진 체계 .....	3
III. 시책별 추진계획 .....	4
1.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4
1-1.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	5
1-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6
1-3.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9
1-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0
1-5.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	13
1-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	17
1-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8
1-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20
2. 학령기 학생의 통합교육 내실화 .....	21
2-1. 통합학급 운영 · 관리 강화 .....	22
2-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23
2-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25
2-4. 연구 · 시범학교 운영 및 교사연구회 조직 · 운영 .....	26
2-5.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	27
2-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29
2-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30
2-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31
3.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	32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33

3-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36
3-3.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39
3-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42
3-5. 특수학교(급) 종일반 및 방과후교육활동, 방학프로그램 운영 .....	44
3-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46
3-7.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48
3-8.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49
3-9. 특수교육교원 양성지원을 위한 교육 실습학교 운영 .....	50
3-10.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52
3-1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	53

**IV. 특수교육 관련 행사 ..... 55**

4-1. 전국 특수교육 관련 행사 .....	55
4-2. 인천 특수교육 관련 행사 .....	56

**V. 인천 특수교육 장학계획 ..... 59**

**VI. 특수교육 현황 및 주요사업 ..... 67**

**VII. 행정사항 ..... 72**

**부 록**

**1. 특수교육 주요 사업 계획**

○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계획 .....	84
○ 통합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계획 .....	101
○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수업실기발표대회 .....	105
○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계획 .....	114
○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계획 .....	125
○ 체험학습 운영 계획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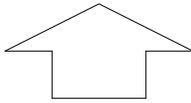
## 2. 특수교육 업무 도움자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근거 및 기준 .....	149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관련 절차 및 서식 .....	152
○ 통합학급 운영 지침 .....	157
○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설치 기준 .....	160
○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 .....	162
○ 장애인 등록 절차 .....	163

# I. 인천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 목 표

장애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능력 향상



## 주요 시책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학령기 학생의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역점 추진 사항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충실
-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 방법 다양화
-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더불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현
-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전환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인천 특수교육의 기저

## 1. 인천교육 지표 및 시책

### 교육 지표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



### 교육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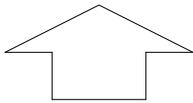
1.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
2.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
3.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
4.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 구축
5.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정착

## 2. 2010인천교육 역점 사업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행동이 변하는 문화시민 교육 강화
-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 진학지원 정보센터 운영
- 영재교육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 자연 친화적 학교시설 조성
-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 3. 2010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추진 체계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



#### 추진 방향

-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장애인의 교육접근 보장
- 통합교육 지원 확대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특수교육의 분권화 및 체계화



#### 중점 추진 과제

-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 Ⅲ. 시책별 추진 계획

#### I.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가. 목표

- 의무교육 확대 실시 및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및 장애인의 교육 접근 보장

##### 나. 추진방향

- 장애 또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 진단, 치료 혹은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통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 다. 추진과제

- 1-1.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 1-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3.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5.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 1-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 1-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1-1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 추진목적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수혜기간을 연장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 등의 제공으로 사회진출 및 적응 용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이라 함) 제3조(의무교육 등)

### 1) 의무교육 연한 확대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순회교사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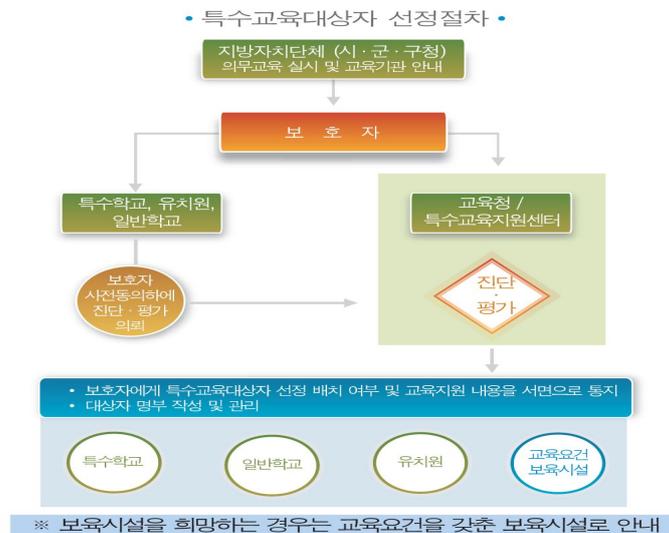
- 2010년 유치원 특수학급 4학급 신설, 고등학교 특수학급 8학급 신(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8명 배치 등 의무교육 지원 확대

※ '10학년도(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생

※ '11학년도(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12학년도(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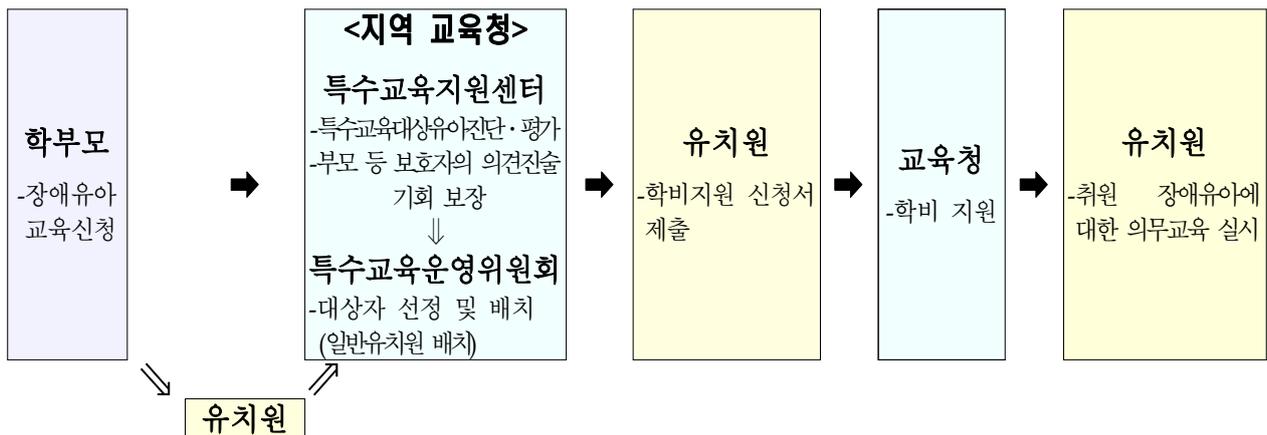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 학생 및 배치 현황 파악
  - ※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현황, 배치 유아 현황 등
-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소속 직원 연수 희망 조사 및 실시(년 1회 이상)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전원 취학을 위한 안내 및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2) 일반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 대상유아 지원 지속적 추진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역교육청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대상자 선정 절차 홍보
  - 유치원의 실제 소요 경비를 조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침' 작성 활용
- ②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 의무교육 확대 적용에 소요되는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수립
- ③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홍보 강화
  - 원아 수 확보 및 유치원 과정 운영 활성화 촉진

## 추진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실시 및 실태파악

-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을 요하는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사업내용 홍보자료를 작성한 후 유관 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 보호자에게 홍보토록 협조 요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실시

## 2) 장애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 특수학교 유치원과정과 유아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편성 및 가정 순회 교육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학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원 및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교육지원 절차, 교육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실시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장애영아에 대해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통한 순회교육 제공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담당 교원을 지정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연수 실시

#### 4)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무상교육 지원요청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에 국한하지 않고, 가급적 수업 일수 120일 미만이라도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 교원 및 행정가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대상 홍보 실시
- 장애영아 무상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수 실시

#### ② 장애영아학급 설치·운영, 순회교육 등 제공

- 수요에 근거하여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 1-3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추진 목적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 1) 장애영역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신설 추진

- 특수학교 1교 신설 추진 : 2013년 개교 목표  
- 위치 : 서구 검단 택지개발예정 지구

### 2)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급 우선 설치  
- 2010학년도 유치원 4학급, 초등학교 17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8학급  
계 36학급 신(증)설

###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특수학교(급) 급당 정원 연차적 감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정 정원	4.0	6.0	6.0	7.0
'10 급당 기준 정원(인천)	4.0	6.0	7.0	8.0

### 지역교육청 조치사항

- ① 지역교육청별 수요조사를 통한 특수학급 신(증)설 자체계획 수립
- ② 특수학급 신(증)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 ③ 서부교육청은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실시

## 1-4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 추진 목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법 제5조(의무교육등), 제25조(순회교육 등)

### 1) 순회교육 대상자 실태 파악

- 지역교육청별 취학의무 유예자, 법인·개인 등이 설립한 복지시설 등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 조사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취학 및 교육지원 안내 등 취학지도

### 2) 파견학급 및 순회교사 증원으로 특수(순회)교육 지원 확대

-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를 위한 장애인시설 파견학급 1학급 증설
  - 난정초등학교 파견학급 2학급 운영에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운영
-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 : 특수교사 24명, 치료교사 15명 배치
- 특수학교 순회학급 편성 운영 : 인혜학교, 연일학교, 미추홀학교, 은광학교

###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P.12 순회교육 운영방안 자료 참조)

###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지도방법,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②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선정·배치
- ③ 순회학급에 대해 교내 학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재·교구 구입비 등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지원

## ◀ 순회교육 운영방안 ▶

### 1. 운영 방침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2. 학급 편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 운영

### 3. 교육과정 운영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본 운영방안을 참고하되, 그 외 사항은 인천광역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함

## 1-5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 추진 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의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치료효과 증진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
  -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후 학교급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거나, 건강장애의 경우 선정절차를 서면으로 신속 처리하는 방안 추진
-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안내, 관련 정보,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로 활용

###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내실화

- 병원학교 설치 운영
  -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소아과 의사 등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을 부여하여 원활한 병원학교 운영 도모

- 병원학교 개설 운영 : 2개 병원학교 운영(협력학교 2교)
- 가천의과학대학교길병원학교 1학급(협력학교 : 인천석천초등학교)
- 인하대학교부속병원학교 1학급(협력학교 : 인천신광초등학교)
- 사이버학급 운영 :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 병원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모(p.16 참조)

### 3)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강화(p.16 참조)

-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강화
  - 병원학교 교재 교구 완비 및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
  - 병원학교 : 정규 특수교사 배치 (2인)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순회교육, 병원학교, 화상강의 활용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 교원 연수에 포함하는 등 홍보 철저
- ②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입급 학생에 대한 월별 출석확인 통지 철저 :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신청 공문 접수일 기준으로 배치

## 생활기록부 기재 및 성적 관련

①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출석확인서 확인, 학업성적 평가는 평가 당일 재적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에 공문으로 등록해지 조치하고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한다.

※ 학업성적 평가는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성적 처리에 준한다.

### <출석인정 절차>

1. 학교장이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2. 교육청에서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에 등록 조치 → 3.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출석에 대해 출석확인서를 학교로 송부하고, 학교장은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부여 및 순회교육·병원학교·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하도록 지원

###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개별화건강관리계획은 물론, 병원학교·화상강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 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이용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년별·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배치된 특수교사 외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예비교사도우미 등의 방문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시스템을 적극 활용
- 학사 관리 :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조치
  - 최소수업시간 : 초등학교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생 1일 2시간 이상
- 병원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결과 적극 활용

###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수업일수 확보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도우미제 등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혹은 화상강의시스템 적극 활용
-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으로 인정
  - 인천교육청 자체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 1-6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 추진 목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학교의 특수성,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인천광역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준수
- 특수학교 내 학교급별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준수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급별 특성에 적합한 성교육 실시와 교직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이해 및 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추행(폭력)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도 철저

####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치료지원 방안 강구

- 대상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장학지도를 통한 교육과정 적정 운영 지도
- ② 특수학교별, 특수학급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행

## 1-7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내실화로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적절한 교육 제공 및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구성원 :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실시
  - 결과 통보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
-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개별화교육계획의 관리
  - 전출학교에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적합한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 특수교육보조원, 자원 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의 확대

### 3) 개별화교육 지원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대회 개최

- 특수학교(급) 수업실기발표대회 개최

- 시기 : 2010.4. ~ 2010.7.
- 입상자에 대한 특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②항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  
(1등급 : 1.0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점)
  - 수업실기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혁신마일리지 3점 부여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교사자율 연구회 운영지원
- ②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자료 전시회
- ③ 수업실기발표대회 및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참여 적극 권장

## 추진목적

-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평생교육시설·설치)

##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평생학습관 및 산하 도서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을 위한 장애인시설 파견학급 설치·운영  
: 1개 시설 2학급(난정초등학교 소속 샬롬원 파견학급)
-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자치단체 등록여부, 운영형태, 시설종류, 학생 현황 등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등록 평생교육시설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여건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등록 평생교육시설 : 작은자야학, 민들레야학, 밀알야학, 바래미야학 등

## 2. 학령기 학생의 통합교육 내실화

### 가. 목표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의 질 제고
-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해소 및 교원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 나. 추진방향

- 통합교육 실시 기관의 확충 및 통합교육 지원 교원의 확대 배치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통합교육 접근성 강화

### 다. 추진과제

- 
- 2-1.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2-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2-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2-4.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교사연구회 조직·운영
  - 2-5.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 2-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2-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2-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추진 목적

- 통합학급의 교재 · 교구,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장학 및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1)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활동 지원

-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의 순회교육 실시
  - 교재 · 교구비 등의 지원 확대
- 일반학급 재학 저시력학생 및 청각장애학생 파악 지원 확대 및 홍보
  - 확대교과서 · 확대독서기 · 보청기(FM보청기 포함) 보급
  -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여)

## 2)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적정 배치
- 통합학급의 일반학생 수 감축 : 일반학급 보다 2~3명의 정원 감축 권장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1학급 당 450천원

## 3)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적정 배치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
  -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 가능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최소 30~40% 이상을 일반학급 수업에 참석토록 조치
  - 건강장애학생 및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지원계획 수립 · 실천

## 4) 교육청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 특수학급 교사연수 각 연 1회 이상 실시

## 2-2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추진 목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1) 특수학교의 운영 개선

-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 확보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장애영유아 상담,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확대

### 2)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운영형태의 전환으로 통합교육 확대 지원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간 협력 강화
- 일반학생·일반교사의 장애인식 개선·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육·교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장학지원 강화
- ② 교육청 주관 특수학교 경영 평가시 학교운영 전환 노력 반영
- ③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장학 지도 등의 지원

## 추진 목적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 순회 교사 배치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5조(순회교육)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 방안 모색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 조사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또는 인근 특수학급 교사의 지원을 받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IEP 작성 및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를 통한 관련서비스 지원
- 동일교 또는 인근학교 특수교사의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 장애 특성에 따라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2) 순회교육을 통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 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사 배치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순회 특수교육 지원 요구 조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를 통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사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강화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추진목적

- 통합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통합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 모형 개발 및 교육 촉진
-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활성화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1) 교육청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 통합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1교(인천부원초등학교 - 2년 과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한 통합교육 모델 개발 추진

## 2) 교사연구회 운영

- 교육청별 초·중·고 통합교육 연구회 조직·운영
  - 대상 :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
- 교육청별 유·초·중·고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운영
  - 대상 : 특수교육 교원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연구회 조직·운영 및 참가 협조
- ② 특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운영 및 참가 협조

## 추진 목적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교육 연수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수행역량 강화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교육청별로 통합교육 실시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자체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합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우선하여 이수토록 하고, 모든 교사에게 확대 실시

##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원격 직무연수 과정 운영

- 시기 : 2010.3월 ~ 2010.5월 중
- 대상 및 인원 : 유·초·중·고 통합학급 담당교사 1,000명
- 연수비 지원 : 1인당 연수비 50,000원 인천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 연수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 특수교육 직무연수 과정 개설 운영
- 초등 통합교육 직무연수 30시간 과정(초등교원 40명)

## 2)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 3)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 참여 강화
- 지역교육청별 통합학급 및 일반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연수 :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교직원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
- 특수교육 아카데미 운영
  -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 아카데미 운영학교 선정 운영
    - 운영교 : 지역교육청별 1교, 총 5교
    - 운영내용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이해 연수 지원

#### 4) 특수교육 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제공

-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일반교과 교육 직무연수 지원 : 50명

#### 5)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개최

- 시기 : 2010.3월~2011.1월
- 참가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입상자에 대한 특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②항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1등급 : 1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점)
  - 계획서 제출자에 창의 마일리지 3점 부여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특수교육 직무연수 미이수자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에 전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추후 연수이수 실적 확인 예정
- ② 특수교육 교사의 일반교과교육(초·중등 교육과정) 연수 참가 적극 안내
- ③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홍보 및 참가 권장

## 2-6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추진목적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1)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지도자료 (2003~2005) 활용

### 2) 학기별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ise.go.kr)의 장애이해교육 사이트(edu.kise.go.kr) 활용

### 3)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예술 행사 개최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 4)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일반학교 1교와 특수학교 1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인 주간 지정일, 지정시간에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2-7

##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학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등 명시

### 2) 장애학생 학력평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

- 연구주제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단위평가 참여 방안
- 연구학교 지정 운영 : 1교 (부평서중학교 - 2년 과정)
- 내 용 : 장애학생 학력평가 참여 방안 마련

### ◀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운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09-37호)

-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
  -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녹음기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약시(저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뇌성마비(뇌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

## 추진 목적

-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1)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교육청별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 및 실적 점검 강화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도모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부터 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포함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대상임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특별교부금 및 지방비로 설치한 편의시설 점검 강화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
-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및 개선 계획 수립 등의 조치

### 3.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 가. 목표

-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보강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화 및 분권화 체제 구축

#### 나.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부모 및 가족 상담, 장애진단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종일반 및 방과후교육활동,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체제 강화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산업체를 활용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기회 확대
- 중증 장애학생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수준별 직업교육 실시

#### 다. 추진과제

- 
-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3-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3-3.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3-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 체계 마련
  - 3-5.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후교육활동, 방학프로그램 운영
  - 3-6.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3-7.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3-8.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3-9. 특수교육 교원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 실습학교 운영
  - 3-10.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3-11.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 대학의 교원 양성 실습학교 운영
-

## 추진 목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동사무소, 시·군·구청별 장애복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 확보 :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파악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특수교육 관련 각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유관 기관에 배부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마련 방안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력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전담인력 활용 방안 추진
- 지역 내 특수교육연구회 분과 조직을 활용하는 등 학년별, 장애영역별, 분야별 우수교사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시 상담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수립 시행

- 특수학급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지역별 순회교육 지원

### 3) 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p.31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참조)

- 가정, 시설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순회교육 지원 제공
- 장애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거주지역 중심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 유지, 타지역 센터와 정보 상호교류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내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후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지역교육청 조치사항

- ① 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및 역할을 고려한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수 기준 등을 운영계획서에 마련
- ② 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출('10. 2월 16일까지)
- ③ 순회교육 제공, 진단, 상담 및 각종 지원 실적 계획 및 기록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리 철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

### 1. 설치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중심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등에도 설치 가능

### 2. 운영

- 1)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하에 운영
- 2)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배치로 상시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담당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 상담 담당

### 3. 기능

#### 1) 특수교육 활동 지원

- 통합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상담
-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 및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 특수교육보조원 훈련 및 관리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계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정보 수집관리
- 유아 발달진단 결과 정보 관리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장애아동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지원

## 3-2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신·구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전환기에 치료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5조(보조인력),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 지원),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1) 치료지원

- '10년에 유치원 과정 및 초1~4학년, 중1학년에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13년에는 유·초·중·고의 전 학년에 제공
-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5~6학년, 중2~3학년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
- ※ 단, 기본교육과정 적용 초5~6학년, 중2~3학년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치료지원 제공 시간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단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적용 학년	유, 초1, 2	초3, 4	초5, 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 2) 가족지원

-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4) 통학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5)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의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 ※ 단,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서비스 관련학과 졸업자 및 민간자격 소지자 활용

## ◀ 치료지원 운영계획 ▶

### 1. 목 적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 2.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결정
  - ※ 참고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제1호 서식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결정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 참고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 3. 대상자 선정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2010년은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교육적 진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 치료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 ※ 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기본교육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초5~6학년, 중2~3학년,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

### 4. 제공 방법 및 제공 인력의 자격

-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
  - 시·도의 여건(예산 규모, 치료사 현황, 도시 및 농어촌 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기존 치료실을 활용한 치료사 배치
    -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활용
    - 치료지원 바우처제도 활용
    - 기타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

### 3-3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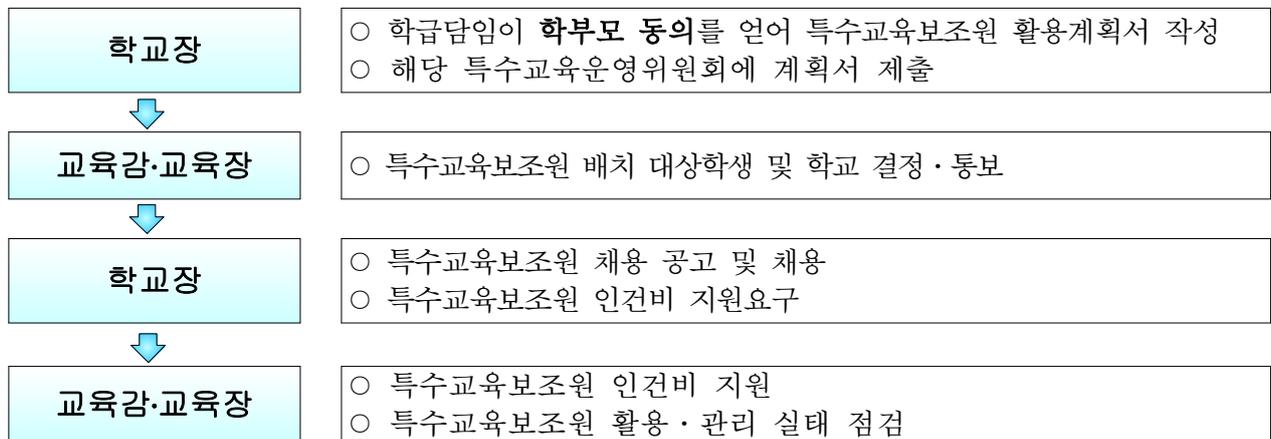
###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1)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확대

- 자격기준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대상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교육청 배치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382명  
자활후견기관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70명  
사회복무 요원 70명

- 연도별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육청 배치	130	254	303	372	382
자활기관 배치	91	96	73	70	70
계	221	350	376	442	452

## 2)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공익근무요원 배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 고려
- '10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이 병무청에서 교과부로 이관되어 추진되므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현장에 필요한 직무연수 실시
- 재교육 및 추가연수가 필요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과정' 사이버연수를 활용하거나, 사이버연수를 근무시간에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학교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계획 수립 시행
- ②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홍보 및 관리 철저
  - 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고용·훈련·활용·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학교의 학교장(감)·교사 대상연수 강화
  - 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자체 연수계획서 수립·시행
- ③ 특수교육보조인력 현장 우수사례 또는 미담 발굴 및 홍보
- ④ 공익근로요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외의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배치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토록 조치
- ⑤ 공익근로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제거

##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활용방안 ▶

### 1. 신 분

- 학교회계직

### 2.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시·도교육청 주관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3. 역 할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
- 정규교사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육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4. 배치방법

- 담임교사(특수학급 설치학교의 경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담임 공동)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학생에 한해 배치

### 5. 배치기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배치

### 6. 활용 및 관리

- 특수학급 설치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하는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담당
- 특수학급 미설치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하는 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 3-4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활성화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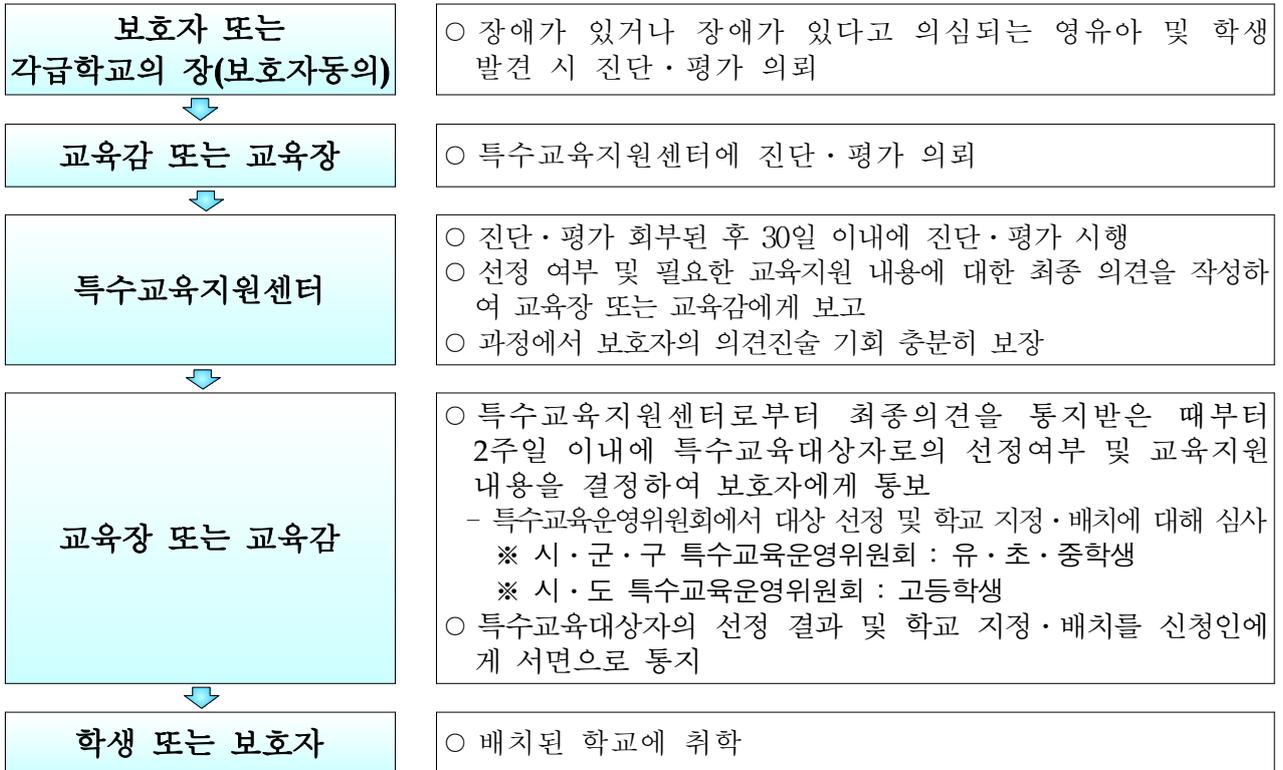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요구를 판단하는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 조기발견 및 의무·무상교육 지원 제공

###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학습부진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및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원과-2487 관련(2009.10.07)

#### 지역교육청 조치사항

- ①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내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 ②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정책 추진 관련 사전 조사 실시**
  - 특수교육 정책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요구 조사 실시
  - 사립유치원 이용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요구 및 지원 방법 등
- ③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 제작 활용**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기관, 일반학교에 시달
- ④ **구비서류 간소화**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치료영역 등 지원내용을 정하기 위해 의사, 치료사, 치료교육 교사 등 포함

### 3-5

## 특수학교(급) 종일반 · 방과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1) 특수학교(급)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지원 규모 : 특수학교(급) 방과후 종일반 운영 36학급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학급수	급당 지원액	예산	비 고
275일 운영	18	20,000	360,000	
365일 운영	18	25,000	450,000	
계	36	45,000	810,000	

### 2)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 운영 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교 학생
- 운영 방법 : 1학생 1프로그램 참가 원칙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 내 프로그램 개설 운영(주2회, 회당 2시간, 월16시간, 월50만원)
    -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월 5만원 이내 지원)
    - 교육청 지정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 참가(무상 참가)
  - 특수학교 학생
    - 평일 방과후시간을 이용한 학교 내 프로그램 개설 운영  
(주2회, 회당 2시간, 월16시간, 월50만원)
    - 2,4주 휴무토요일을 활용한 주말 방과후교육활동(월16시간, 월50만원)
    - 교육청 지정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 참가(무상 참가)
  -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 방과후교육활동 전문 프로그램 개설 운영

### 3) 방학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 방학 중 종일반 연장 운영, 방학 중 1일 현장학습 등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강화
- 학교 밖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교육활동을 방학 중까지 연장 운영
- 일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3-6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기관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률 제고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1) 특수학교 진로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상담 강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 능력 평가

- 적성, 직업능력 및 태도 평가 후 진로·직업교육계획 수립 적용
- 고등학교 졸업학년 학생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
  - 취업 또는 전공과 입학 여부 등 결정

### 3) 고등학교 과정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강화
- 개정된 직업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체제 구축 운영 및 실무자간 협의체 구성 운영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지원

### - 지원 내용 및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
일반고등학교(특수학급)	2+1제 디딤돌 직업전환교실	44,000
현장중심 산업체 실습지원	고등특수학급 위드 Job	12,000
특수학교(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29,000
계		85,000

**4) 지역사회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으로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취업 지원**

-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직업평가, 사업체 발굴, 적응지도 등을 위한 시교육청, 경인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간의 협약 체결
- 장애학생 취업정보 엑스포 개최
  - 시기 : 10 중
  - 주관 : 미추홀학교

## 3-7

## 특수교육의 정보화 지원 강화

###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의 정보화 지원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접근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 확충 지원

-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학습용 컴퓨터 등

### 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ICT 활용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 자료 전시회 시 멀티미디어 자료 및 ICT 활용교수자료 출품 권장

### 3)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 모든 유형의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자·음성자료 지원
  - ※ 이압사이트(blind.kise.go.kr) : 시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 교육자료 제공
- 재택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 특수학교(급)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전자도서관 운영
  - ※ 전자도서관(ebooks.kise.go.kr) : 동화를 비롯하여 영어학습, 과학학습 등 전자책 구비
- 인천특수교육정보화경진대회 개최
  - 시기 : 5월 중
  - 대상 :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

\*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 추진 목적

- 다양한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1) 특수교육 교원 연수기회 확대

- 직무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인천교육연수원,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 연수원 등

## 2) 특수교육 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 특수학교(급) 중등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연수 실시 및 지원

## 3) 치료교육 교사의 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 연수 및 전환 발령 추진

- 대상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재활복지 정교사
- 내용 : 특수학교(초등, 중등)정교사(2급) 자격취득 연수
- 2010년도 자격전환 보수교육 및 부전공 연수 완료 이후 시·도별 특수교육 교원 수급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초등 또는 중등교사로 발령 추진

##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연구학교로 지정·운영
-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의 전문성 제고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 1) 특수교육 교육실습 연구학교 지정 운영

## 2) 운영학교 지정 학교 : 운영학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별도 지정 통보

## 3) 운영내용

-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 실습방법에 관한 현장연구 수행
-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신장 및 교육실습 방법에 관한 연구

## 4) 학교 조치 사항

## ○ 학교별로 합리적인 교육실습 계획 수립·운영

-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
- 학교별 교육실습생 배정원칙을 마련하여 준수
- 교육실습생 지도내용 선정을 위한 지도교사 의견 수렴·반영
- 교육실습생에게 적절한 과제 부여

## ○ 효율적인 교육실습 체제 정비

- 교육실습 지도 특수교사 선정 :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학교 1년 이상 근무자
- 교육실습 지도 통합학급 교사 선정 : 초등 1급(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학교 1년 이상 근무자
- 지도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 철저 : 지도교사 연수계획 수립, 지도교사의 교수-

## 학습 지도능력 배양

- 실습환경 조성 및 실습록 작성 지도, 교육실습생 복무지도 철저

### ○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1호, 연구학교에 관한규칙 제9조
- 대상 :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 유공교원(현장연구 및 관찰실습·참가실습·수업실습·실무실습을 포함한 교육실습을 직접 지도한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실습주무부장, 교감)
- 가산점 부여 : 평정점 부여는 월 **0.01**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인 대상 교육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2주 이상 6주 미만 : 0.01
  - 6주 이상 8주 이하 : 0.02

- 교육실습 지도교사 선정과 가산점 부여 시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가산점 평정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의거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계산

## 3-10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추진 목적

-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수준 제고

특수교육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운영 지도 강화
-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및 건실한 경영 유도

#### 2) 특수학교(급) 장학협의 기능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협의를 위한 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평가 철저
- 장애유형별·학교과정별·교과별로 동료장학·요청장학 및 임상장학 강화

#### 3)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

## 3-1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를 지원하여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확대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 1) 추진방향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효율적인 교육 기회 제공

### 2) 추진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통학버스 미이용자 중 거리 상 버스 통학 학생
  - 제외대상 : 초등학교 학구 위반학생(취학 예정학교에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근 학교 취학한 경우 예외), 통학버스 이용학생, 통학버스 이용 가능하나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도보 통학 학생
  - 지원인원 : 710명(초등 50명, 중·고등 500명, 특수학교 160명, 콜택시 100명) - 지원방법 : 1일 2회 지원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만 계산(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액 : 1회당 초등 450원, 중·고 900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2,500원  
※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통학비 산출
- 특수교육지원센터 차량 지원
  - 지원대상 : 교통이 불편한 특수교육지원센터 2곳
  - 지원방법 : 승합차 임차(1센터당 25,000천원)
  - 이용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학교
  - 이용방법 : 사전 요청 및 교사 탑승

##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조치사항

- ① 통학비 지급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 ② 통학비 소요 경비 산출 및 집행의 적정성 관리 철저

## IV. 특수교육 관련 행사

### 4-1 전국 특수교육 관련 행사

#### 1) 제8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6회 전국 장애학생e스포츠 대회

- 일 시 : 2010.10.13(수)~14(목)(예정)
- 장 소 :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시 배방읍)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CJ인터넷(주)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참석대상 : 장애학생, 일반학생, 부모, 특수학교(급) 교원, 시·도교육청, 유관 기관 등 약 1,700명
- 행사내용
  - 전국 특수학교(급)학생 정보경진대회(13종목)
  -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8종목)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세미나
  - 문화행사(KBS 특집공연, 장애학생 바리스타관 등)

#### 2) 2010년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일 시 : 2010. 9월(예정)
- 장 소 : 경상남도 일원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경상남도교육청
- 대상영역 : 감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참가대상 : 전국 특수학교(급)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

### 3) 2010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10. 5월(예정)
- 장 소 : 대전광역시 일원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교육청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 참가대상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 참가규모 : 총 2,000명(예정)

### 4) 특수교육대상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예방 관리 철저

-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 장애영역과 정도에 따른 예방 관리 계획 수립 추진
- 관련 : 특수교육지원과-1993('09.09.03), 특수교육지원과-2706(09.10.20), 특수교육지원과-2856(09.10.29), 특수교육지원과-3001(09.11.06)

## 4-2 인천 특수교육 관련 행사

---

### 1) 장애학생 디딤돌 취업정보 엑스포 개최

-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참가하는 취업정보 엑스포 개최
- 개최 시기 : 2010. 10월중
- 주관학교 : 미추홀학교

### 2) 2010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연합캠프

- 일시 : 2010. 6월중
- 장소 : 미정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 : 인천광역시고등학교특수교육연구회
- 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 3) 2010년 중학교 특수학급 작품전시회

- 일시 : 2010. 10월중
- 장소 : 미정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 : 인천광역시중학교특수교육연구회
- 대상 :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 교사, 500여명

### 4) 2010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예능발표회

- 일시 : 2010. 11월중
- 장소 : 인천학생문화회관(예정)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 : 인천광역시고등학교특수교육연구회
- 대상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 교사, 500여명

### 5) 2010년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정보화경진대회

- 일시 : 2010. 5월중
- 장소 : 미정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 : 인천시고등학교특수교육연구회·특수학교 1교
- 대상 : 특수학교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사, 200여명

\* 인천 특수교육정보화경진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6) 2010년 특수학교(급) 수업실기발표대회

- 시기 : 2010. 5월중 - 6월

- 대상 : 특수학교 및 초·중·고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입상자에 대한 특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②항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  
(1등급 : 1.0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0점)

#### **7)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개최**

- 시기 : 2010.3월~2011.1월
- 참가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입상자에 대한 특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②항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  
(1등급 : 1.0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0점)

# V. 장 학 계 획

## 1. 장학의 목표

-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학급 운영 정상화로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현

## 2. 장학의 방향

- 가. 장학의 유형은 교내자율장학, 담임장학, 종합장학, 요청장학, 표집장학, 원격사이버 장학 등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준수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
- 다. 주요교육시책이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업방법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라. 장애영역별 자율장학의 기능을 강화하여 특수학교(급)간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동적으로 교육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마. 담임장학을 통하여 주요 교육시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추진상황을 파악분석하고 협의, 정보제공, 대안제시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 바. 학교의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한다.
- 사.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해결하도록 협의·지원한다.
- 아. 교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활동의 참여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학교 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 지원한다.

### 3. 장학의 실제

#### 가. 지역교육청 장학

- 목 적 : 인천 특수교육 시책의 적절한 추진과 특수교육 현장의 활성화 도모
- 대 상 : 5개 지역교육청(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청)
- 내 용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현황 파악
  - 특수교육 시책 추진 상황 협의
  -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구안 협의
  -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
  - 문제점, 우수사례 등 과제를 중심으로 담당자와 협의
- 시 기 : 장학지도 및 기타 필요시
- 결과 처리
  - 우수사항 및 보완사항 통보
  - 건의사항, 현안문제 해결방안 마련

#### 나. 초·중학교 특수학급 표집 장학지도

- 목 적 : 초·중 특수학급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수업방법개선 방안 모색
- 대 상
  - 초등 특수학급 :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교
  - 중학교 특수학급 : 남부, 동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1교
- 시 기 : 2010. 5월(초등), 2010. 10월(중학교)
- 내 용 : 특수학급 공개수업 실시 및 교수-학습 개선 방안 협의  
지역교육청 특수담당 장학사 및 지구별 특수교사 수업참관  
특수학급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문제점 확인
- 결과 처리
  -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학지도**

- 목 적 : 교육계획 추진 현황 확인, 자율장학 능력 배양 및 교수-학습방법개선
- 시 기 : 2010. 4 ~ 2010. 12
- 대 상

구분 \ 월	4	5	6	9	10	11
특수학교		예림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검단고 인제고	신송고 상정고	신현고 양촌고 인천기계공고	교동고 삼량고	동산고 인천남고	신명여고 해송고
초·중 특수학급		초 특수학급 (북부 1교)			중 특수학급 (남부, 동부 1교)	
시범학교 방문지도 (기타)		부원초 부평서중			부원초 부평서중	

- 내용
  - 인천 특수교육 시책 및 교육 계획 추진상황 확인
  - 학교 수준 교육과정 및 개별화 교육 추진 방안 협의
  - 교수-학습 개선 및 생활지도 방안 협의
  -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 계획 및 실천
  - 중·고등학생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및 우수사례 일반화 추진

**라. 원격장학**

- 목 적 :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수교육 정보 제공
- 대 상 : 지역교육청, 특수학급(초·중·고), 특수학교
- 시 기 : 연중
- 내 용

- 특수교육활동 우수사례, 정보 제공 및 소개
- 연구학교 운영 및 현장교육 실천 우수사례 제공
- 멀티미디어 자료 및 각종 특수교육자료 제공
- 실시방법
  - E-mail과 전화(420-8309, 시교육청 특수담당 장학사)를 통한 상담 장학
  -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원격 장학 실시
    - : 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장학교실/ 특수교육
    - 남부교육청 홈페이지(<http://www.nambu.ice.go.kr>)
    - 북부교육청 홈페이지(<http://www.bukbu.ice.go.kr>)
    - 동부교육청 홈페이지(<http://www.tongbu.ice.go.kr>)
    - 서부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obu.ice.go.kr>)
    - 강화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anghwa.ice.go.kr>)

#### 마. 지역교육청 주관 장학 실시

- 목 적 : 특수학급 교수-학습 과제 협의와 수업협의를 통한 현장 특수교육 개선
- 주 관 : 지역교육청
- 대 상 :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 내 용
  - 초·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협의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개별화교육 추진 협의
  - 인천특수교육시책 추진 상황 협의
  - 담임장학, 요청장학, 맞춤형장학, 동료장학, 임상장학, 통신장학 등 다양하게 실시
  - 지역교육청 특수담당 장학사 및 장학요원 활용

#### 바. 협동자율장학

- 목 적 : 특수학교별, 특수학급별 또는 지구별 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협동하여 교수-학습 등의 공통적 개선 방안 모색
- 주 관 : 특수학교(자율장학협의회), 특수교육교과연구회(초·중·고)

- 대 상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내 용
  -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수-학습 개선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우수사항 일반화 및 과제 해결 방안 모색
  - 특수교육 정보 교류 및 공통적 관심사 협의
  - 중·고 교과연구회, 교과연구회협의회 공동 실시

#### 사. 학교별 자율장학

- 목 적 : 단위 학교별 자율적·창의적 교수-학습 개선
- 주 관 : 각 단위학교
- 대 상 :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유·초·중·고등학교
- 내 용
  - 학교별 자율장학체제 구성
  -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율장학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기타
  - 특수학급 임상장학 또는 동료장학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
    - 교장, 교감,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업참관 및 협의회 개최

#### 4. 장학의 관점

##### 가. 특수학교 장학관점

###### 1) 일반현황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학교장명	개교년월일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 2) 장학관점

영역	장학내용	특기사항
1. 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특수교육 강조점 반영</li> <li>○ 교육목표 수립의 적절성</li> <li>○ 교육계획의 실천</li> <li>○ 지속적인 수정보완</li> </ul>	
2.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기준, 지침의 이행</li> <li>○ 시간배당(년, 학기, 월, 주) 운영</li> <li>○ 지역 및 학교 실태 고려</li> <li>○ 재량활동의 편성·운영</li> </ul>	
3.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활동</li> <li>○ 적응활동</li> <li>○ 계발활동</li> <li>○ 봉사활동</li> <li>○ 행사활동</li> </ul>	
4. 개별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li> <li>○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li> <li>○ 지도과정 및 평가내용 충실</li> </ul>	
5. 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 계획수립 및 실천</li> <li>○ 순회 교육과정 운영 충실</li> </ul>	
6. 학업성취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성취목표에 의한 평가</li> <li>○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관련성</li> <li>○ 생활통지표의 교육적 활용</li> </ul>	
7.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작, 구입, 관리 및 활용</li> <l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li> <li>○ 미적,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li> </ul>	

영역	장학내용	특기사항
8. 치료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별 실태 파악</li> <li>○치료교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실생활과의 연계지도</li> <li>○치료실 및 기자재 확보</li> </ul>	
9.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장애에 적합한 직업교과 개발</li> <li>○현장 실습 및 산학 협동 체제 구축</li> <li>○진로·직업상담 및 직업교육실 기자재</li> </ul>	
10. 자율장학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장학 계획 및 추진</li> <li>○교내 자율장학 체제 구축</li> <li>○개인 연수 및 집단 연수 실시</li> </ul>	
11. 학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인사 관리</li> <li>○전·입학 관리</li> <li>○보건 위생 시설 구비</li> <li>○교직원 복지 지원</li> <li>○교육시설 관리</li> </ul>	
12.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생활 습관 지도</li> <li>○안전사고 예방 지도</li> <li>○학교폭력 예방지도</li> </ul>	
13. 보건·체육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 실시</li> <li>○약물 복용, 흡연, 음주 예방 지도</li> <li>○체육교육 계획 및 추진</li> <li>○체육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li> </ul>	
14.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li> <li>○학교 시설의 개방</li> <li>○지역사회와의 유대</li> <li>○장애체험 프로그램 계획</li> </ul>	

3). 우수사항 및 보완 사항

우수사항	보완 사항

4). 건의 사항 및 현안 사항

5). 우수 사례 : 별지 작성

## 나. 특수학급 장학관점

### 1) 일반현황

학교명	전체학급 수	특수학급 수	특수학급 학생 수	학교장명	특수학급 교 사 명	특수학급 설치 년월일

### 2) 장학관점

영역	장학내용	특기사항
1. 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특수교육 강조점 반영</li> <li>○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li> <li>○ 통합교육 수립 및 실천</li> </ul>	
2.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li> <li>○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수립 및 실천</li> </ul>	
3. 생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생활습관 지도</li> <li>○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지도</li> <li>○ 행동 교정 및 누가 관찰 기록</li> </ul>	
4. 보건·치료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실천</li> <li>○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 예방교육</li> <li>○ 보건교육 실시</li> <li>○ 개별 특성에 적합한 치료교육(지원)실시</li> </ul>	
5.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개선 노력</li> <li>○ 개별화 프로그램 구안 적용</li> <li>○ 개인별 성취목표에 의한 평가</li> <li>○ 자료 구비 및 효율적 활용</li> </ul>	
6.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교육 여건 및 기자재 확보</li> <li>○ 미적, 정서적 교육 환경 조성</li> <l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li> </ul>	
7. 진로·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li> <li>○ 진로 지도 및 졸업생 추수지도</li> <li>○ 잠재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li> </ul>	
8. 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교사 특수교육 연수 실적</li> <li>○ 교원 특수교육 연수 실적</li> </ul>	
9.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급 운영비 관리의 적정</li> <li>○ 학부모교육 및 가정연계교육 실시</li> </ul>	

### 3). 우수사항 및 보완 사항

우수 사항	보완 사항

### 4). 현안문제 및 건의 사항

### 5). 우수 사례 : 별지 작성

## VI. 특수교육 현황 및 주요사업

### 1.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현황

구분 \ 과정		유치원 (학급수)	초등학교 (학급수)	중학교 (학급수)	고등학교 (학급수)	전공과	계 (학급수)	비고
특수 학교	인혜학교	1	14 (3)	10	10	3	38	초등에 순회학급 3학급 포함
	연일학교	1	16 (6)	9	10	3	39	초등에 순회학급 6학급 포함
	미추홀학교	1	16 (4)	11	11	3	42	초등에 순회학급 4학급 포함
	예림학교	1	7	7	4	1	20	
	은광학교	0	9 (3)	3	3	-	15	초등에 순회학급 3학급 포함
	성동학교	6	6	4	5	-	21	
	혜광학교	1	6	5	7	3	22	
	계	11	74	49	50	13	197	초등에 순회학급 16학급 포함
특수 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	·	·	·	73	-	73	+8
	남부	9	61	16	·	-	86	+3
	북부	3	63	19	·	-	85	+5
	동부	3	65	20	·	-	88	+11
	서부	5	65	23	·	-	93	+8
	강화	·	18	5	·	-	23	1
	계	20	272	83	73	0	448	+36
순회	지원센터	13	8	8	4		33	유아 13명, 초등8명, 중등8명, 고등학교 4명
	계	13	8	8	4	0	33	+33
특수학급수 (순회교사 포함)		33	280	91	77	0	481	+69
특수학교학급수		11	74	49	50	13	197	+14
전체 학급 수		44	354	140	127	13	678	83

가. 특수학급 현황(유치원 · 초등학교)

과정	교육청	년도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 수)	비고
유치원	남부					
	북부	02 07 10	1 2 2	1 3 3	부평동초병설(1), 삼산유치원(2)	
	동부	02 09 10	1 1 3	1 1 3	논곡초병설(1), 논현유치원(1), 고잔유치원(1)	신설2: 논현1 고잔1 +2
	서부	06 09 10	2 3 5	2 3 5	양지초병설(1), 가림초병설(1), 신석초병설(1) 해서초병설(1), 검암초병설(1)	신설2: 검암1 신석1 +2
	시	02 05 10	1 1 1	7 9 9	자유유치원(9)	
	계	9 10	7 11	16 20	신설4 : 신석초병설1 논현초병설1 논곡초병설1 검암초병설1	+4
초등학교	남부	04 05 06 07 08 09 10	34 35 35 36 37 38 38	55 56 56 57 58 59 61	송월(1) 영종(1) 대화(1) 운서(1) <b>백학(2)</b> 주안남(1) 백령(1) 북포(1) 영흥(1) 승학(1) 용현남(1) 신선(1) 공항(1) 용유(1) 관교(1) 주안(2) 승의(2) 학익(2) <b>신흥(3)</b> 도화(2) 용현(2) 신광(2) 용일(2) 서화(2) 석암(2) 용정(2) 남부(2) 주안북(2) 연학(2) 문학(2) 만석(2)서림 (2) 서흥(2) 송림(2) 송현(2) 창영(2) 덕적(1),경원(1)	증설2: 백학1 신흥1 +2
	북부	04 05 06 07 08 09 10	28 30 33 36 36 37 38	43 45 49 55 55 60 63	십정(1) 일신(1) 마곡(1) 하정(1) 부내(1) 미산(1) 용마(1) 상정(2) 부마(1) 진산(1) 부곡(1) 영선(1) 후정(2) 대정(1) 부평서(1) 산곡남(2) 산곡(2) 부개(2) 부평남(3) 부흥(1) 동암(2) 청천(3) 신촌(2) 한길(2) 부원(2) 부광(2) 삼산(2) 동수(2) 개흥(2) 갈산(2) 갈월(2) 부개서(2) 산곡북(2) <b>부평북(2) 부평동(3) 금마(2) 부일(1), 마장(1)</b>	신설1: 마장1 증설3: 금마1 부평북1 부평동1 감축1: 부흥-1 +3
	동부	04 05 06 07 08 09 10	22 23 26 28 34 38 43	36 36 39 45 53 58 65	청량(1) 소래(1) 새말(1) <b>연수(2)</b> 논곡(2) 구월(1) 동부(1) 석천(3) 조동(2) 서면(1) 만수(2) 송도(2) 중앙(2) 석정(2) 만우급(1) 상인천(1) 간석(2) 동춘(2) 구월서(2) 만수북(2) 주원(2) 장수(2) 약산(2) <b>만월(3)</b> 남동(2) 선학(2) 성리(2) 도립(2) 옥련(1) 축현(1) 청학(1) 담방(1) 동막(1) 장도(1) 남촌(1) 신월(1) 인동(1) 동방(1) <b>인수(1) 은봉(1) 상아(1)</b> <b>해송(1) 서창(1)</b>	신설5 : 인수1 은봉1 상아1 해송1 서창1 증설2 : 연수1 만월1 +7
	서부	04 05 06 07 08 09 10	24 25 33 36 43 45 47	32 33 42 48 56 61 65	계양(1) 화전(1) 신석(1) 불로(1) 검단(1) 단봉(1) 서운(2) 심곡(1) 마전(1) 안산(1) 길주(1) 성지(1) 굴현(1) 금곡(1) 발산(1) <b>검암(2)</b> 양지(1) 소양(2) 부현(1) <b>건지(2)</b> 작동(1) 부평(2) 안남(2) 서곶(2) 석남(2) 석남서(1) 신현(2) 효성 (2) 봉수(2) 효성동(1) 천마(2) 가좌(2) 계산(2) 효성서(2) 교대부설(1) 가석(2) 봉화(2) 병방(2) 작전(1) 당산(1) 경서(1) 왕길(1) 효성남(1) 해서(1) 원당(1) <b>목향(1)</b> <b>양촌(1)</b>	신설2 : 목향1 양촌1 증설2 : 검암1 건지1 +4
	강화	04 05 07 08 09 10	12 13 15 16 17 17	12 13 15 16 17 18	강화(1) 선원(1) 불은(1) 화도(1) 조산(1) 내가(1) 양사(1) 송해(1) 교동(1) 삼산(1) 해명(1) 삼성(1) 길상(1) 지석(1) 하점(1) <b>난정(2) 대월(1)</b>	신설1 : 대월1 증설1: 난정1 감축1: 양도 -1 +1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116 120 126 140 151 166 175 183	170 173 178 183 198 220 239 255 272	신설9 : 마장1 인수1 은봉1 상아1 해송1 서창1 목향1 양촌1 대월1 증설10 : 백학1 신흥1 부평북1 부평동1 금마1 연수1 만월1 건지 1 검암1 난정1 감축2 : 부흥 1 양도1	+17

나. 특수학급 현황 (중·고등학교)

과정	교육청	년도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 수)	비고			
중학 교	남부	05	11	12	인천남중(2) 신흥중(1) 남인천여중(1) 제물포여중(1) 인화여중(1) 화도진(2) 선화여중(1) 선인중(1) 용현중(1) 공항중(1) 관교중(1) 인주중(1) 영흥중(1) 신흥여중(1)	증설1: 화도진중1  +1			
		06	13	14					
	북부	07	13	14	부평중(2) 부평서중(1) 산곡중(1) 부평서여중(1) 갈산중(1) 삼산중(1) 진산중(1) 산곡남중(1) 부일여중(1) 산곡여중(1) 부원여중(1) 청천중(1) 부흥중(1) 부일중(1) 부원중(1) 부평여중(1) 구산중 (1) 동암중(1)	신설3: 구산중1 동암중1 부평여중1 감축1:진산중1 +2			
		08	14	16					
		09	15	17					
		10	18	19					
동부	05	9	9	상인천중(1) 구월중(1) 인송중(1) 만수중(1) 인천여중(1) 연수중(2) 만성중(1) 인천중(1) 만수여중(1) 만월중(1) 논곡중(1) 신송중(1) 선학중(1) 함박중(1) 성리중(2) 동방중(1) 정각중(1) 구월여중(1)	신설1: 구월여중1 증설1:성리중1  +2				
	06	11	11						
서부	07	14	14	가좌중(1) 북인천여중(1) 동인천여중(1)서곶중(1) 계산중(1) 불로중(1) 작전중(1) 간재울중(1) 방축중(1) 제물포중(1) 마전중(1) 안남중(2) 신현중(1) 검암중(1) 명현중(2) 가현중(1) 효성중(1) 양촌중(1) 검단중(1) 가좌여중(1) 석남중(1)	신설2 가좌여중1 석남중1  +2				
	08	15	16						
	09	17	18						
	10	18	20						
강화	05	3	3	강화중(1) 강화여중(1) 강남중(1) 교동중(1) 강서중(1)					
	06	4	4						
계	07	6	6	신설6 : 부평여중1 구산중1 동암중1 구월여중1 석남중1 가좌여중1 증설2 : 화도진중1 성리중1, 감축1 : 진산중1	+7				
	08	6	6						
	09	5	5						
	10	5	5						
고등 학교	시	04	31	33	기계공(2) 해양과학(1) 부평공업(2) 정보산업(2) 계산공(2) 부평고(1) 가림고(2) 선인고(1) 인천여공(2) 인천디자인(2) 부평디자인과학고(1) 문학정보(1) 생활과학(3) 인화여(2) 강남고(1) 청학공고(1) 가좌고(1) 가정고(1) 학익고(1)영선고(1) 동산고(1) 동인천고(1) 진산고(2) 부개고(1) 인제고(1) 산곡고(1) 인일여고(1) 승덕여고(1) 논현고(1) 학익여고(1) 강화고(1) 원당고(1) 백석고(1) 계산고(1) 공항고(1) 도화공고(1) 부평고(1) 부개여고(1) 강화여고(1) 박문여고(1) 문일여고(1) 효성고(2) 민수고(1) 은봉고(1) 작전고(1) 부흥고(1) 검단고(1) 부평여고(1) 석장여고(1) 작전여고(2) 계산여고(1) 신현고(1) 산송고(1) 교동고(1) 삼랑고(1) 상정고(1) 양촌고(1) 신명여고(1) 인천남고(1) 해송고(1)	신설 3 : 해송고 인천남고1 신명여고  증설 5 : 효성고 작전여고 인천여공고 인천디자인고 인천생활과학고			
		05	38	40					
		06	47	50					
		07	61	64					
		08	67	71					
		09	70	76					
		10	76	83					
		총계	01	141			205	유(11원 20학급) 초(183교 272학급) 중(76교 83학급) 고(60교 73학급)  신설(유 4, 초 9, 중 6, 고 3 총 22교) 증설(유 0, 초 10, 중 2, 고 5 총 17교) 감축(유 0, 초 2, 중 1 총 3교)  *병원학급2-초등특수학급에 포함	유: +4 초: +17 중: +7 고: +8  ----- 계: +36
			02	146			210		
			03	159			228		
04	169		239						
05	186		258						
06	226		300						
07	261		347						
08	291		383						
09	309		412						
10	330		448						

## 2. 2010년도 특수교육 주요 사업(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주요 시책명	순	단위사업별 내용	목표	시기	대상 및 인원	예산	비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3회	연중	운영위원	1,792	
	2	·특수학급 신증설	10학급	2월	고등학교	368,000	
	3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186명	연중	장애유아	743,784	
	4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2교	연중	건강장애학생	111,400	
	5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수학급	4학급	3월	중도중복장애학생	120,000	
	6	·특수학교 전공과 추가 개설	1교	3월	특수학교	450,000	
	7	·장애인시설 파견학급 설치	1학급	3월	장애인시설	10,000	
	8	·장애인의 날 표창	1회	4월	특수교사, 학생	950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내실화	9	·특수교육 연수	6회	연중	특수통합학급	56,420	
	10	·특수학교(급) 장학지도	14회	연중	특수학교(급)	2,132	
	11	·특수학예체험경진대회	3회	연중	특수학교(급)	17,000	
	12	·특수교육아카데미 운영	5교	연중	특수학급	5,000	
	13	·특수교육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3교	연중	특수학교(급)	17,000	
	14	·2+1제 직업전환교실 운영	65학급	연중	고교 특수학급	56,000	
	15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1회	1월	일반(특수)교사	3,780	
	16	·특수교사 수업실기대회	1회	6월	특수학교(급)	4,535	
	17	·현장중심 직업교육	7교	연중	특수학교	29,000	
특수교육 지원 강화	1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6개소	연중	6개 교육청	609,920	
	19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활동	630학급	연중	특수학교(급)	2,015,000	
	20	·치료사배치 및 치료지원	400명	연중	특수학교(급)	779,000	
	21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36학급	연중	특수학교(급)	760,000	
	22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382명	연중	배치교	5,408,738	
	23	·특수교육 발전협의회 운영	1회	연중	발전위원	300	
	24	·특수교육 운영 계획 발간	1회	2월	교육청	1,280	
	25	·특수교육 홍보자료 발간 보급	5회	연중	특수학교(급)	8,238	
	26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1회	5월	특수학교	5,000	
	27	·장애인관련단체 행사지원	15회	연중	장애 관련 단체	10,650	

주요 시책명	순	단위사업별 내용	목표	시기	대상 및 인원	예산	비고
	28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12회	연중	특수학교(급)	338,998	
	29	·특수교육장학자료 발간	1회	9월	특수학교(급)	6,940	
	31	·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12회	연중	특수학교	2,000	
	31	·특수교육 교수학습 여건 개선	1회	연중	특수학교(급)	332,700	
	32	·특수학급 환경선진화 사업	30학급	3월	특수학급	300,000	
	33	·취업정보 엑스포 개최	1회	9월	특수학교(급)	60,000	
합계						12,635,557	

## Ⅶ. 행정 사항

1. 본 계획은 특수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장학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이므로 특수학교에서는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학생들의 장애특성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여건 및 학생 실태에 적합한 지역교육청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장학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2. 본청의 지역교육청별 특수학급 표집장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 속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4.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는 특수학급에 대한 조정 이관 배치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해당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5.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에서는 붙임의 보고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 6. 특수교육 계획 제출**
  - 가. 지역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2월 26일(금)까지 3부 제출
  - 나.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3월 12일(금)까지 특수학교 3부, 고등학교 특수학급 1부 제출
- 7. 특수교육현황 제출**
  - 가. 제출일시 : 2010. 3. 12(금) (작성기준 : 2010. 3. 1)
  - 나. 제출양식 : 지역교육청(가, 나, 다, 라 & 서식1, 2, 3, 4, 5, 6 )  
: 고등학교 특수학급(가, 나, 다, 라 & 서식3, 서식4, 서식6, 서식7-5)  
: 일반고등학교(나, 다, 라, 서식6)  
: 특수학교(서식7)

## 2010학년도 특수교육 현황

### 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유·초·중·고 : 교육청, 고등학교)

학교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성별		학년별 학생 수							장애유형별 학생 수								
		남	여	1	2	3	4	5	6	계	정신 지체	정서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기타	계

\* 대상 : 2010학년도 특수학급 입급자

### 나.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 교육청, 고등학교)

학교명	성명	성별	학년·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비고

\* 대상 : 초등학교는 2005-2010년도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급 설치교 및 미설치교 모두 포함, 중, 고등학교는 2008-2010년도 배치학생)

### 다. 2010학년도 취학 유예·면제자 보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 교육청, 고등학교)

순	학교명	전체 취학 유예자수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수	비고
	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취학유예 면제자

### 라. 통학실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통학 버스 수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				자가 통학 학생 수				비고	
			1시간 이내	1-2 시간	2시간 이상	계	도보	자가용	일반 버스	전철		
유치원	대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 특수학급 현황 (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급)**

**2010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서식 1>**

작성자 : 교육청 장학사 (인)

원감(교사) (인)

**1.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현황**

설치 유치원 수	설치 학급 수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명 (설치 학급 수)

**2. 연령별·장애별 아동 현황(주 장애에만 표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세																										
4세																										
5세																										
계																										

**3. 특수학급 담임교사 현황**

특수(유아)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타	합계

**4. 운영형태별 현황**

설치 유치원 수	취원아동 수			학 급 수										
				연 령 별					운 영 형 태 별					
	남	여	계	3세	4세	5세	혼합	계	전일제	시간제	특별 지도	순회 교육	계	

## 2010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서식 2>

작성자 :            교육청 장학사            (인)

### 1. 특수학급 현황

설치 학교 수	설치 학급 수				비 고
	저학년	고학년	전학년	계	

### 2. 학년별 학생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비고
남								
여								
계								

### 3. 장애별 학생 현황(주 장애에만 표시) : 발달지체는 만9세 까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 4. 특수학급 담임교사 현황

특수 학급수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합계
	특수교사로 임용된 교사	일반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소계	

### 5. 운영형태별 현황

학교 수	학생 수			학 급 수										
				학 년 별				운 영 형 태 별						
	남	여	계	저	고	전체	계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혼합	특별 지도	순회 교육	계	

## 2010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서식 3>

작성자 :            교육청 장학사                   (인)  
                           중(고등)학교                   (직인)

### 1. 특수학급 현황

설치 학교 수	설치 학급 수					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무학년	계	

### 2. 학년별 학생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비 고
남					
여					
계					

### 3. 장애별 학생 현황(주 장애에만 표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계																						

### 4. 특수학급 담임교사 현황 및 일반학급 교사 중 특수자격 소지자 현황

특수 학급수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합계
	특수교사로 임용된 교사	일반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소계	

### 5. 운영형태별 현황

학교 수	학 생 수			학 급 수											
				학 년 별					운 영 형 태 별						
	남	여	계	1	2	3	무학년	계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혼합	특별 지도	순회 교육	계	





**바. 특수학교 현황(특수학교)**

**2010 특수학교 현황<서식 7>**

=====

학교 (직인)

1. 장애 영역 :
2. 과정별 학생 현황(작성기준일 : 2010. 3. 1)

구분	과정	유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순회	시설	전공	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학급 수	인가																			
	편성																			
학생 수																				

3. 교직원 현황

가. 교원(작성기준일 : 2010. 3. 1)

구분	직명	교장	교감	교 사						합계	비고
				유치	초등	중학	고등	전공과	보건		
정원											
현원	남										
	여										
	계										
과부족											

나. 일반직(작성기준일 : 2010. 3. 1)

구분	직명	일반직	기능직	기타			계	비고
정원								
현원	남							
	여							
	계							
과부족								

4. 직업 보도실 운영 현황

직업보도실										
담당교사										
학생 수										

5.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학년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률 (진학+취업)	취업 직종						
2006										
2007										
2008										
2009										
2010										

6. 통학실태

재학생 수	통학 버스 수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				자가 통학 학생 수				비고
			1시간 이내	1-2 시간	2시간 이상	계	도보	자가용	일반 버스	전철	
명	대	명									

7. 예산

(단위 : 천원)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	계
2008년						
2009년						
2010년						

8. 특수학교 교사 현황

구분 과정	특수자격별 교원 수						일반 교사	실기 교사	재활 복지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총계	비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시각	청각	특수 교사	계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계													

\* 자격 구분 없는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항에 표시, 일반교사의 인적사항은 비고란에 기재

9. 특수학교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전공자 현황(보건교사 제외)

교원 수(1)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2)		특수교사자격증 미 소지자(5)	비고
	일반교사·특수교사 자격증 중복소지자수(3)	특수교육관련학과 졸업자수(4)		

\* 교장·교감 포함. 1=2+5, 2=3+4. 특수교육전공자=대학에서 특수교육전공자.

비고란에 자격증 미 소지자 인적사항 기재.

10. 특수학교 교원명단(양식 변경하지 말 것)

순	과정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시 출신교	소지 자격	교육경력			표창	전화번호
							특수	일반	계		
1											
2											
3											

- \* · 교육경력은 2010. 3. 1 기준 15년 6개월은 15.06으로 표기
- 소지자격은 특1정, 특2정, 초1정, 초2정... 중복소지자(일반, 특수)는 모두 기재
- 표창기록은 교육감이상 훈격과 수상연월일 표기(교육감 '94.05.15)
- 과정란은 유치, 초등, 중등, 요육, 양호, 실기 등 표시
- 제출학교 : 자유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8개교

## 특수교육 주요 사업 계획



- 
1.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계획
  2. 통합교육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계획
  3. 특수학교(급) 수업실기발표대회 운영 계획
  4.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계획
  5.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계획
  6. 체험학습 운영 계획
-

2010학년도

#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유아교육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201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3176(2009.11.18.)]

## 1. 목 적

- 가.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종일반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나. 교육(education)과 보육(care)의 통합운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2. 방 침

- 가. 참여 학생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하고, 운영일수는 교내 수업일수 이상으로 운영
- 나. 특수학교(급)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
- 다. 현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활동과 일반 보육활동의 분리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라. 초·중등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으로 장애학생 부모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
- 마.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결손가정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함.
- 바. 종일반 운영은 유치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순으로 희망자에 한해 저학년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함
- 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되, 수업일수 이상을 기준으로 함

아. 운영시간은 연중 평일은 11:00~19:00, 토요일은 10: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3. 세부 시행 계획

#### 가. 운영 대상교 및 규모

교육청명	순	운영학교명	운영기준일수	운영 학급수		
				유치원 과정	초·중고	계
시교육청	1	인혜학교	365일 운영	1	3	4
	2	연일학교	365일 운영	1	3	4
	3	미추홀학교	365일 운영	1	2	3
	4	성동학교	365일 운영	1	2	3
	5	예림학교	365일 운영	1	2	3
	6	자유유치원	365일 운영	1	·	1
소계(6교)			365일 운영학급	6	12	18
시교육청	1	은광학교	275일 운영	·	2	2
	2	해광학교	275일 운영	1	3	4
남부교육청	3	송의초	275일 운영	·	1	1
	4	신흥초(신규)	275일 운영	·	1	1
북부교육청	5	갈월초	275일 운영	·	1	3
	6	십정초	275일 운영	·	1	
	7	부평동초(신규)	275일 운영	·	1	
동부교육청	8	소래초	275일 운영	·	1	3
	9	주원초	275일 운영	·	1	
	10	만월초(신규)	275일 운영	·	1	
서부교육청	11	가림초병설유치원	275일 운영	1	·	3
	12	석남초	275일 운영	·	1	
	13	검암초(신규)	275일 운영	·	1	
강화교육청	14	양도초	275일 운영	·	1	1
소계(14교)			275일 운영학급	2	16	18
총계 20교				8	28	36

## 나. 교육활동

- 1) 특수학교 종일반 교육프로그램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영역별 교과교육, 특기적성교육, 치료지원 및 보육활동을 개별화교육 방법으로 운영한다.
- 2) 일과 계획은 아동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 3) 일과 활동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 4) 교육내용은 아동의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교사의 계획에 의한 개별지도 및 그룹지도를 실시한다.
- 5) 모든 교육활동은 관찰 및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추후 교육활동에 반영한다.

## 다.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 1) 장애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한다.
- 2) 아동의 관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교구를 구비한다.
- 3) 급식은 학교 식당을 이용하고, 간식을 위한 냉장고를 별도로 마련한다.

## 라. 대상아동 선정

- 1) 선정 기준
  -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유아),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 종일반 대상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과정 취학 전까지의 장애유아로 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아, 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한다.
  - 특수학교에서는 주말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교육활동, 특수학급에서는 종일반 또는 방과후교육 활동 참여학생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 2) 선정 절차
  - 학 교 : 종일반 운영에 대한 학부모 공지
  - 학부모 : 종일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 사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종일반 희망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 교 :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선정기준에 의거 직원협의 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3) 선정 시기  
학기 초에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 선정하며 단위학교 및 학생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4) 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마. 학급 편성

- 1) 유치원 과정 종일반  
- 8명 이내의 장애유아로 편성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편성·운영한다.
- 2) 초·중·고등부 종일반  
- 10명 이내로 편성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편성·운영한다.
- 3) 학부모의 요구, 특수학교의 실정과 지역사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한다.
- 4)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특수학교의 주말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종일반 참여 학생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급을 편성한다.

## 바. 연간 교육 일수

- 1) 연간 수업일수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은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유치원 과정 종일반 강사는 토요일의 경우, 종일반 운영을 위한 준비로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2)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학교의 휴업과 관련한 종일반 운영일은 학교장이 정한다.

## 사. 일과 운영

- 1) 종일반의 평일 운영 시간은 11:00~19:00까지, 토요일은 10:00~18:00 내외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학교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조정한다.
- 2) 프로그램 운영 : 유아교육 및 보육, 초·중등교육 및 보호, 특기적성교육, 치료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 후 운영한다.

## 아. 담당자 배치

- 1) 유치원 과정 종일반은 양질의 교육과 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급당 종일반 강사 1인을 배치하며, 유치원 기본교육과정과 보육활동 등으로 운영한다.
-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일반은 종일반 강사 1인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특기적성교육 및 교과교육, 치료지원, 보육 및 기초생활기능 등의 프로그램 운영한다.

**자. 예산 지원**

- 1) 지원규모  
-종일반 : 36학급
- 2) 지원기간 : 2010. 3. 1 - 2010. 2. 28
- 3) 급당 지원단가 : 20,000천원(275일 운영교) 혹은 25,000천원(365일 운영교)  
- 인건비를 학교회계직원 4등급 평생교육사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종일반 운영비로 사용
- 4) 급당 지원내역  
※ 2009년도 연봉 기준액과 동일 [교육협력과--194(2009.01.14)호 참조]

(단위: 원)

직 종	연봉 기준액	기준일수	월임금	일할기준액	연봉등급	비고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17,222,100	365일	1,435,180	47,180	4등급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12,975,550	275일	1,081,300	47,180	4등급	

- 5) 2010년 3월초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비 배부 예정
- 6) 운영비 관련 유의사항
  -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과 인건비 잔액 여부에 따라 연봉기준일수는 증감가능하나 추가 지원금은 없음.
  - 나) 인건비는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중 평생교육사의 연봉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교육협력과-194(2009.01.14)호에 의거 2009년도 편성기준을 적용함]

**차. 종일반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유지
- 2) 교실바닥 냉·난방(의무시설)과 교실 화장실, 세면실, 냉온샤워시설(권장사항) 등 시설·설비 개선
- 3)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비

## 4.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채용 및 관리

### 가. 자 격

- 1)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초·중학교 일반교사,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치료사 자격소지자
-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치료지원기관, 보육기관 강사 또는 교사 경력자
- 3) 기타 종일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임 용

- 1)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종일반 강사 희망자가 해당학교에 서류를 접수한다.
- 2) 종일반 담당 강사 선발은 서류 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 3)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 강사 임용은 학교장이 한다.
- 4) 채용절차
  - 시교육청 : 운영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학교장 : 담당자 채용공고 및 접수
    - ※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내용 홍보, 선발일정 공고
  -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강사 희망자가 해당학교에 서류 접수
  - 학교장 :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학교장이 임용

### 다. 임용기간

- 1)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  
(2010. 03. 01. - 2011. 02. 28. 기간 중 휴가 중 운영은 부모의 희망,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되 휴가 중 운영 권장)

### 라. 채용 계약서 작성

- 1) 계약서 양식은 학교 회계직 채용에 적합한 양식을 사용한다.
- 2) 채용 계약은 교장과 종일반 담당 강사가 직접 작성한다.
- 3) 계약서에는 교육시간, 인건비, 주요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한다.

### 마.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방법

- 1)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기하고 월별로 지급하며, 인건비 지급의 원인행위는 행정실에서 시행한다.

## 바. 복 무

- 1) 공무원복무규정, 단위학교 교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등 중요 부분은 계약서에 명기한다.
- 2) 업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보육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실정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 3) 종일반 담당 강사의 업무
  - 방과 이전 : 수업보조, 급식보조, 수업준비 지원을 통해 장애유아의 보육과 교육활동이 통합지원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참여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개별지도 및 그룹지도를 실시한다.
  - 방과 이후 : 학교별 방과 이후 보호중심 보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발달과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통합 편성하여 실시(예시: 보육-교육 통합활동 프로그램 편성)한다.
- 4)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는 교직원과 상호 긴밀한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5) 1일 근무시간은 11:00-19:00으로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 사. 해 임

- 1)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임한다.
- 2) 계약 기간 중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특수학교 종일반 보육담당 강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 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다)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라)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마)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아. 신 분

- 1) 신분은 강사 채용으로 한다.

## 5. 행정사항

- 가. 학부모 대상 종일반 운영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철저
- 나. 학교별 종일반 강사 채용 결과 보고: 2010. 2. 24(수) (양식 4)

- 다. 학교별 종일반 운영계획서 제출 : 2010. 3. 12(금)
- 라. 학교별 종일반 운영실적 보고 : 2010. 6. 30(수). 2010. 12. 30(목)  
(보고서식 참조)
- 마. 학교별 종일반 운영비 정산보고: 2011. 2. 18(금)

### 【계약시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졸업증명서 1통(2010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
  - 3.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 함) 1통
  - 5. 채용계약서 2부(학교와 담당 강사가 각 1부씩 보관)
  - 6. 성범죄 경력조회 1부
  - 7. 기타 필요한 서류는 특기적성교육 강사 채용 구비서류에 준함
- ※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별첨 2>

##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비 정산 보고서

( 년 월 일)  
(단위 : 천원)

학교명: .  
작성자: .

사 업 명	배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 내역	비 고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계					

<별첨 3>

## 2010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실적 보고

년 월 일

학교명: .

작성자: .

### 1. 학생 현황

학교명	종일반 학생수	종일반 학급수		종일반 학생수		비 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 2. 교사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지 자격증	전 화
종 일 반				

### 3. 시설 및 교재교구 현황

시 설 명	냉 방 시 설	난 방 시 설	세 면 대	화장실
확보 현황				

교재교구명				
확보 현황				

### 4. 운영 및 예산 현황

운영일수	운영시간	일일 평균 출석학생수	출 석 율	예산 지출현황	
				인건비	운영비

## 5. 운영 평가

영역	실태	문제점	대책
보육활동			
특기적성교육			
교과교육			
치료지원			
기초생활기능			
보조활동			

## 6. 우수사례

가. 주 제

나. 내 용

다. 효 과

라. 관련 사진

활동 사진 부착	활동 사진 부착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활동 사진 부착	활동 사진 부착
사진설명	사진설명

**[양식1]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 강사 채용 심사자료**

심사일					
종일반 교사 선발위원회 명단	※성명(직위)표시				
심사기준표					
종일반 강사 신청자 성명	졸업(재학) 학교명 및 학과명	교사관련 자격사항	관련경력	기타	※순위

※ 순위 :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순위를 기재

※ 신청서 및 선발위원회 회의록 등 제반 서류는 학교에 비치

**[양식2]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 강사 임용결과**

구분	내용	비고
학교명		
종일반 강사 성명		
임용일		
생년월일		
성별		
졸업(재학)학교명		
졸업(재학)학과		
교사관련소지자격증		
특수교육관련소지자격증		

[양식3]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 강사 응시원서**

① 접수번호	② 성명	한글			사진(첨부)
		한자			
③ 주민등록번호			희망부서	종일반	
④ 현 주소	(우편번호: - )				
⑤ 전 화	주간		야간		손전화:
⑥ 학 력	. . .		. . .		
	. . .		. . .		
⑦ 교원자격	. . . ( )교사 자격증 소지				
	. . . ( )교사 수료증 소지				
⑧ 교육보육 경력	기 간	직 급	근 무 처	발 령	
	. . . - . . .				
	. . . - . . .				
	. . . - . . .				
⑨ 병 역	(해당자만 기재)				
⑩ 첨부 서류	1.( ) 교원자격증 사본 각1부				
	2.( ) 졸업증명서 1부				
	3.( ) 주민등록초본 1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인천 학교장 귀하					



2010학년도

**통합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통합교육 실천 사례연구 발표대회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I. 목 적

- 통합교육의 방법 개선 및 장애학생의 교육적 성취 제고
- 통합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 실제적인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교육 정착 유도
- 실천중심의 통합교육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II. 방 침

- 연구대회 명칭은 『통합교육 실천 사례연구 발표대회』라 칭한다.
- 연구대회 주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정한다.
- 연구대회 기간은 1년(당년 3월1일~12월31일)로 정한다.

## III. 세부추진계획

### 1. 계획서 제출

가. 제출 일자 : 2010년 5월중

나. 제출할 곳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지역교육청 수합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자유유치원, 특수학교,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다. 제출 편수 : 1편

라. 계획서 심사는 하지 않으며, 계획서 제출자에게 시 대회 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을 부여함.

마. 계획서 작성 요령

- A4 좌철 5~8쪽 내외
  - 앞 표지에 제6회 통합교육 실천사례 연구계획서, 주제, 소속, 직, 성명 기재
  - 체제는 창의적으로 구성
- 바. 계획서 제출자 명단 양식

**『제6회 통합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계획서 제출자 명단』**

(        ) 교육청(고등학교)

번호	학교명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제	비고
1	공식명칭						
2							

**2. 보고서 제출**

- 가. 제출 기한 : 2011년 1월중
- 나. 제출 편수 : 3부 (시교육청 제출 편수, CD 파일 1매 첨부)
- 겉표지에 '제6회 통합교육 실천 사례연구 발표대회 보고서'와 '제목'만 표기
  - 속표지에 '제6회 통합교육 실천 사례연구 발표대회 보고서' 주제, 소속, 직, 성명 기재
- 다. 제출 자격 : 계획서 제출자 전원
- 라. 연구내용 :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한 내용
-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며 부록 포함 50쪽 이내로 제한함 (A4용지, 좌철, 표지 : 무코팅, 속지 : 흰색, 부록은 20쪽 이내, 흑백 인쇄)
  - 보고서 제출 시 금지 사항(표지 및 내용)
    - 작성자 성명, 학교명, 지역명 등 표기 금지(부록 포함)
    - ※ 특히 첨부자료, 사진 등을 스캐닝할 경우 주의 요함
    - ※ 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성명, 이메일 주소 등)

『제6회 통합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보고서 제출자 명단』

( )교육청

번호	학교명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제	비고
1	공식명칭						
2							
3							

2010학년도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수업실기발표대회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수업실기발표대회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I. 목 적

-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관심 고취
- 창의적인 수업 전략·기술 개발
- 우수 수업 사례의 일반화로 특수교육 교실수업의 질 향상 도모
-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교수 전략·기술 개발**

## II. 방 침

- 각 영역(교과)별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자 수에 비례하여 입상자 수를 결정하며 전체 입상자 수는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자의 40% 이내에서 선정한다.
- **통합학급 수업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수업자의 심사는 지역교육청의 1차 지도안 심사와 시교육청의 2차 현장수업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차 심사(지역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 위주로 심사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자의 40% 이내로 선발하여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 2차 심사(시교육청)에서는 현장수업 심사로 등급별 입상자를 선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1: 2: 3의 비율로 정한다.
- 현장수업공개 내용 및 시간은 40분으로 한다.
-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선정된 입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상 수여 및 연구 가산점을 부여한다.
- 참가자 전원에게 혁신 마일리지 3점을 부여한다.

- 우수 교수-학습과정안은 교수학습지원센터(Edu-I)에 탑재하여 일반화한다.

### Ⅲ. 세부 운영 계획

#### 1. 참가 요령

- 가. 참가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교사,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통합교과 담당교사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본 대회 1등급 입상자는 수상한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참가할 수 있음)
- 나. 참가인원 : 제한 없음
- 다. 참가영역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통합학급의 협력교수

#### 2. 심사 방법

##### 가. 1차 심사(지역교육청-교수학습지도안 심사)

##### 1) 주 관

- 유·초·중학교 :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
- 자유유치원·고등학교·특수학교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2) 기간 : 2010. 5월중

##### 3) 참가대상 및 인원

-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교사 (제한 없음)
- 공·사립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사 및 통합교과 담당교사  
(특수교사와 함께 협력교수를 하는 경우에 한함)

##### 4) 심사 : 지역교육청별 계획에 의함

- 심사위원 : 교육전문직, 교장(감), 장학전문요원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교수·학습 과정안 심사표 <서식2>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지역교육청 재량으로 별도의 심사 관점을 첨가할 수 있음

5) 선발 인원 : 교수-학습과정안 제출자의 40% 이내로 함

6) 선발 시 고려할 사항

○ 지역교육청은 1차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수 순에 의한 명부를 작성하여 선발하며, 선발 인원이 미달 되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교수-학습과정안은 선발에서 제외

\* 고등학교, 특수학교, 자유유치원은 시교육청에서의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대상자를 결정함

7) 1차 심사 결과 제출

○ 제출 서류 :

- 참가자 명단 【서식1】 과 1차 심사 현황 【서식2】 각 1부

- 교수·학습 과정안 5부

○ 제출 일자 : 2010년 5월 말

#### 나. 2차 심사(시교육청-현장수업 심사)

1) 주 관 : 시교육청(지역교육청 협조)

2) 기 간 : 2010년 6월(세부 일정 추후 공지)

3) 장 소 : 참가 교사의 소속 학교

4) 대 상 : 지역교육청(유·초·중학교) 및 시교육청(특수학교, 고등학교)의 1차 심사에서 선발 추천된 교사

5) 심사내용 및 배점 : 【서식4】 참조

관 점	배 점(100)	비 고
현장수업심사	80	수업설계(20) 교수·학습활동(60)
평소 학급관리	10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내실있는 학급 경영
면담결과	10	수업방법 개발, 수업개선 기여도

6) 선발 방법

- 등급별 입상자 수는 영역별 입상자를 1:2:3의 비율로 1등급, 2등급, 3등급 부여함
  - 심사위원 3명의 백분위 평균 점수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등급별 선발 인원에 따라 최종 입상자를 선정함
  - 동점일 경우 교육 총 경력이 높은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선정함
  - 현장 심사 결과 수업 내용이 부실한 경우(60점 이하)는 등외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 7) 심사 위원 : 교육전문직 및 교장, 교감 중에서 위촉함
- 8) 심사일정은 추후 별도 계획으로 통보함
- 9) 입상자 발표 : 7월 예정

### 3. 시상 및 입상자에 대한 특전

가. 시상 : 1, 2, 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을 수여함

나. 입상자에 대한 특전

-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②항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함

입상 등급	평정점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0점

- 2) 수업실기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혁신마일리지 3점 부여

### 4. 우수 교수-학습과정안 교수학습지원센터(Edu-I)에 탑재

가. 내용 : 1등급 입상자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수-학습과정안

나. 시기 : 2010년 7월중

다. 탑재장소 : 인천교육망 (교실수업개선 웹지원 센터)

라. 탑재방법 : 최종 교수-학습과정안은 정리하여 개별적으로 탑재

- 붙임 : 1. <서식 1> 참가자명단  
2. <서식 2> 1차 심사 현황(지역교육청용)  
3. <서식 3> 참가 추천서  
4. <서식 4> 현장수업 심사표

<서식1>지역교육청 및 학교용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수업발표대회 참가자 명단**

학교명(교육청명)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교육총경력 (2010.3.1기준)	학년반 (수업참여 학생수)	수업공개 희망일	교과 및 지도영역	전화
1					학년 반 (명)			
2								
3								
4								

※ 통합학급 협력교수인 경우 교과 및 지도영역에 표시할 것(예 : 통합학급 협력교수 도덕과)

<서식 2>지역교육청용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수업발표대회 1차 심사 현황**

지역 교육청명	순	1차 심사 대상자 명단		2차 심사 추천자 명단		비율 (2차/1차)	비고
		소속 학교명	교사명	소속 학교명	교사명		
계		명		명			

※ 통합학급 협력교수인 경우 비고란에 표시할 것(예 : 통합학급 협력교수 도덕과)

<서식3> 학교용

**특수학교(급) 수업발표대회 참가 추천서**

소 속		학년 반 학생수	학년 반 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교육총경력 (2010.3.1기준)	년 월		
학교장 의 견			

위 교사를 2010학년도 수업발표대회 응모자로 추천합니다.

2010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4> 현장수업 심사표

**특수학교(급) 수업발표대회 현장수업 심사표(2차)**

2010년 월 일

학 교 명		심 사 자	(인)	
수 업 자		특수학급 학생수 (통합학급 학생수)	명 (통합학급: 일반학급 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명)	
교과영역		장 · 단기 목표		
수업목표				
	평 가 내 용	평 점		특기사항 및 심사의견
		기준	배점	
수업 설계	* 수업계획의 독창성 * 수업 전개의 구체성 * 활동 간의 통합성 * 장애학생 실태 반영	20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활동	* 장애특성에 따른 동기유발 * 장애특성에 적절한 발문 및 대처 능력 * 개별지도의 충실성 * 교수자료 활용도 * 교수 언어의 적절 * 합리적인 시간 배분	20	
	학생 활동	* 적극적인 학습반응 활동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활동 * 기본 학습태도 * 학습활동의 다양화 및 개별화 이행	20	
	교재 교구	* 자료 준비의 충실성, 적합성 * 자료제시의 적절성 *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 자료 준비	20	
평소 학급관리	*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노력 * 내실있는 학급 경영	10		
면담결과	* 학급 특성에 따른 수업방법 개발 · 적용 * 수업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	10		
계		100		

2010학년도

##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I. 목 적

- 치료와 학습의 병행으로 학습결손 부담감을 최소화시켜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 치료 중 일반학교 출석으로 인한 응급처치 부재 등의 미비점을 해소시킨다.
-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에 입급되어 학습을 받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여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또래들과의 관계 유지를 형성시켜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 II. 방 침

- 병원학교는 가천의과학대학교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 개설되었으며 명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천의과학대학교부속길병원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병원학교’(이후 길병원학교, 인하대병원학교)라 칭한다.
- 길병원학교는 인천석천초등학교, 인하대병원학교는 인천신광초등학교를 협력학교로 둔다.
- 사이버학급은 길병원학교 내에 병설로 설치하며, 인천석천초등학교, 인천신광초등학교, 안남중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며, 예비교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
- 병원학교 교장은 소아과 과장으로 위촉하고 담임교사는 인천석천초등학교와 인천신광초등학교 소속 교사 1명을 각각 배정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 사이버학급 교사는 협력학교 교사 및 방과후교육활동 강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시 교사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 1인이 국어, 수학, 과학을 담당하며, 중·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전공교사가 수

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급 이용시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거나, 선정절차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사이버학급은 쌍방향 통신의 화상강의와 u-learning 체제로 운영한다.
- 병원학교나 사이버학급은 학습기간 중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초·중학생은 지역교육청, 고등학생은 시교육청에서 출석확인서를 발급한다.

### Ⅲ. 세부 운영 계획

#### 1. 건강장애(Health Impairment)의 정의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관련)

#### 가. 병원학교의 개념

- 병원학교란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 현 병원학교는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되고 있음

#### 나. 사이버학급의 개념

-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통하여 1:1 화상강의나 탑재된 콘텐츠를 u-learning으로 쌍방향 학습 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하는 형태의 학급

## 다.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http://hoschool.ice.go.kr>)

-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2007.12. 개통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안내, 관련 정보,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로 활용

## 라. 병원학교 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병원학교 특수교사가 소속학교 일반교사, 의료진,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수립하되, 개별화건강관리 계획을 포함

### 2)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개별학생의 요구에 따른 교육 제공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활용 : 컴퓨터나 개인용 휴대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별 학년과 학력 수준에 맞게 지도
- 또래 학생 및 교사 방문 활성화 : 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또래학생 등이 병실 혹은 병원학교 방문 및 개별지도
- u-러닝지원 시범운영 : 병원학교를 인천지역 u-러닝지원 연구학교(안남중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인천교육과학원)와 연계하여 병실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체제를 마련

### 3) 학업 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의 균형 유지

- 입원 시기, 질병의 정도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적응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심리·정서적 부분 강조하고 학업지원과 균형을 유지
-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 시간표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나치게 일회적이고 행사 위주의 수업은 피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

### 4) 학사관리

- 학적은 학생의 소속학교에 두고, 병원학교 출석여부를 소속학교에 출석확인서로 통보하여 학교 출석으로 처리
- 병원학교 소속학교의 출석 확인으로 매달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출석확인서를 발급하면 소속학교에서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

- 학생당 1일 적정 교육시수는 의료진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초등학생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2시간 이상을 최소 수업 시수로 인정

5) 길병원학교와 인하대병원학교에 각각 운영위원회 구성

6) 통원치료학생 순회교육 실시

-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회교육 여부를 결정하되, 부모의 동의와 신청을 받음
- 학생 소속학교의 일반교사나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거나 또는 자원봉사교사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 순회교육 협력교사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순회교육 내용을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등에 의한 순회교육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7) 평가

- 병원학교 담당교사 평가 실시
- 학년 말 병원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마. 사이버학급 운영**

1) 수업방법 : 화상강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콘텐츠활용(u-learning), 순회교육 등 개별화 수업

2) 강의 교과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	국어, 수학, 과학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3) 수업 시간 수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하되, 1단위는 20분을 최소로 하여 조절하여 운영)

- 초등 월 20시간 이상
- 중학교 월 42시간 이상,
- 고등학교 월 48시간 이상

#### 4) 강사

- 인원 수 : 초등학교 교사 - 학급당 담임교사 1명씩

중학교 교사 - 국어, 수학, 영어 교사 각 1명

고등학교 교사 - 국어, 수학, 영어 교사 각 1명

- 선정 : 협력학교 재직교사 혹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사를 공모하여 선정

#### 5) 학사관리 : 병원학교와 동일

#### 6) 사이버학급 신청

초·중학교	⇒ 배치신청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결과통보	학교장 시교육청
고등학교	⇒ 배치신청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결과통보	학교장

#### ※ 문서처리

- 공문과 의뢰자 명단은 전자문서로 제출, 그 외 첨부물은 비전자로 제출함
- 해당 교육청은 서류접수 후 위탁교육신청서 사본, 도우미명단 사본, 학부모 동의서 사본을 접수일자 표기하여 사이버학급 담당교사에게 팩스로 송부함
- 입급 일자 는 해당교육청 서류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신청서류

- 의뢰자 명단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위탁교육신청서 1부
- 도우미 명단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7) 평가

- 사이버학급 강사 평가 실시

- 학년 말 사이버학급의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서식2]

## 위탁교육 신청서

접수번호	2010 - -					
신청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초등학교		연령	만세
		학년반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대상자의 관계	대상자의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위 학생을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학교(사이버학급)에 위탁교육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력평가는 원소속학교에서 처리함

년      월      일

담임교사 (인)

보호자 (인)

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00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3]

## 사이버학급 입급 학생 원소속교 도우미 명단

학교명	입급 학생		원적 학교 도우미 학생				비고
	학반	성명	성명	연락처		e-mail	
				학교	핸드폰		



[서식5]

## 학 부 모 동 의 서 ( 퇴 교 )

학 교		학년 반	
이 름		성 별	
병 명		퇴교사유	

장기적인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하여 병원학교(사이버학급)의 수업지원을 받아왔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보호자 :                      (인)

인천광역시교육감(00교육청 교육장) 귀하

2010학년도

#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I. 목 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학생, 학부모의 심적·경제적 부담 절감을 통한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 II. 방 칩

### 1. 특수학교

-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육활동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 시간과 장소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월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 시 수익자 부담 또는 학교 운영비로 보전
- 운영형태는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특기·적성교육기관 프로그램 참가, 지역사회기관 위탁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운영
- 개설부서 및 강좌는 학교별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치료지원 활동,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활동 등 수요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강좌를 선정하여 운영
- 외부기관,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2. 특수학급

-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운영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월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목적사업비로 교육청별 방과후교육활동비(특기적성교육비)를 별도 지원함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 시 수익자 부담 또는 학교 운영비로 보전
- 운영형태는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특기적성교육기관 프로그램 참가, 지구별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기관 선정 위탁 운영 형태로 하되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운영
- 개설부서 및 강좌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치료지원 활동,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활동 등 수요자의 요구와 실시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강좌를 선정하여 운영
- 외부기관,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Ⅲ. 세부 추진 계획

### 1. 운영 유형

가. 학교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

: 학교 단위로 방과후 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나. 개인별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참가

: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 교육활동 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

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형태

다. 지구별 운영프로그램에 참가

: 지역교육청별로 프로그램 운영 중심학교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인근학교 희망 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라.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사회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

: 관내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운영비 및 강사비를 지원하여 희망 학생들이 참가하는 형태

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 관내에 인가된 방과후 교육활동 기관이 부재하거나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 학생들이 참가하는 형태

## 2. 운영 방법

가. 학교와 학부모간의 협의를 거쳐 운영유형을 선정한다.

나. 운영시간은 학생 소속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시간으로 하되, 그 시간과 장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학생별로 한 가지 프로그램에만 참가할 수 있다.

라. 지역사회기관 운영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학생 직업훈련기관,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마. 매회 2시간씩 주 2회 월 16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3. 운영 예산

가. 1 프로그램당 지원 금액 : 월 500,000원× 10개월 = 5,000,000원

- 지원내역 : 강사료 시간당 25,000원×월 16시간, 운영비 1회당 10,000원×10회

나. 개인별 프로그램 참가자

- 보호자(운영기관)에게 1인당 월 50,000원 이내 지원

- 수강료가 50,000원 미만일 경우 실제 교육비만 지원

#### 4. 운영 주체별 업무

##### 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 학교별 운영형태, 희망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및 참가자 수 파악
- 강사섭외, 강사관리, 강사 인력풀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중심교 선정 및 프로그램 선정
- 소요 운영비 지원
- 강사채용 계약서 작성안, 안내장, 가정통신문, 보도자료 제공 등
- 기타 지원

※ 섭외된 우수 강사는 지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 나.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 운영형태 선정, 프로그램 선정, 강사 채용
- 강사료 또는 개인별 수강료 지급, 운영비 관리
- 강사 계약 체결
- 방과후교육활동 장소 제공
- 기타 관리 지원

#### IV. 기 타

- 방과후교육활동 강사 정보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일자리 신청 > 방과후교육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용
-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관련기관 및 치료지원 관련기관 참조
-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 위탁 운영의 경우, 참가하는 학생들의 교통문제를 해당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협조

2010학년도

# 체험학습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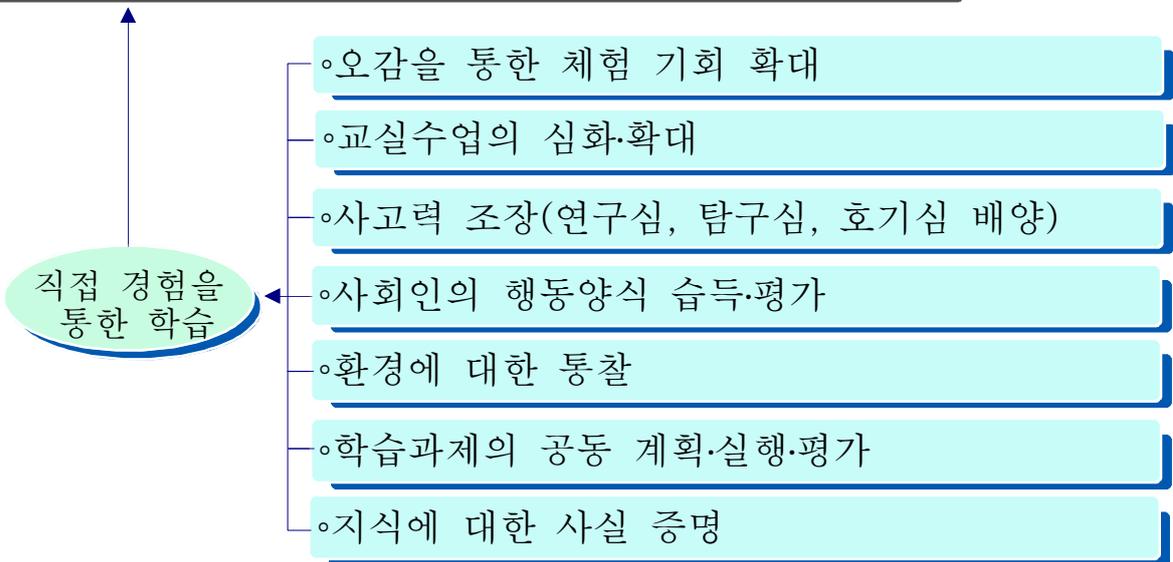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험학습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1. 체험학습의 의의

학교생활과 수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 함양



- 교실에서 학습한 것을 직접 접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활자나 구두설명에 의한 학습에서는 불가능한 오감을 통한 체험
- 교실수업 내용의 이해 심화 확대
- 사고력을 조장하여 연구심·탐구심·지적 호기심 등 배양
- 사회인의 행동 양식을 습득·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 파악과 부여
- 공동 계획·실행·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과정을 풍부히 하기
-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 제공

## 2. 목 적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교과에 대한 안목 증대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
-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제고
- 도·농간 교류 학습 활성화로 지역간 이질감 해소와 다른 지역의 특성 및 자연 환경 이해
- 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가족 동반 활동 기회를 통하여 경로 효친을 실천하고 미풍양속 계승
-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박애정신을 고취하고 삶의 보람을 체득
- 학생 축제 활성화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 구축
- 창의성, 자율성, 협동성을 길러 자주적인 학습능력 신장

## 3. 기본방침

- 체험학습을 통하여 산지식을 습득
- 체험중심의 환경 교육 실시
- 체험학습은 현장 중심의 학습 (현장 체험학습)
- 도·농·어촌 간 학생교류 체험활동 전개

## 4. 추진 방향

### 위탁교류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가 계획하는 개별 위탁이거나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실시되는 공

### 동위탁 체험학습의 형태로 운영

- 연고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소재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 도·농간 자매학교 결연을 통한 교환 학습의 형태도 가능
- 위탁교류체험학습 신청은 사전에 관련교육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실시
- 위탁교류체험학습 실시 후 위탁 교육기간의 생활기록(증명) 사항을 재적교에 통보함으로써 출석을 인정 받음
- 영어마을 입소 학생은 위탁교류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위탁교류체험학습실시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는 영어마을 입소 공문으로 대치(초등)

### 가족동반체험학습

- 학부모, 학생이 계획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체험학습 형태이다.
  - 가족 및 친척간의 가족 행사 참여
  - 가족과 함께 하는 탐구활동
- 가족동반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며,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인정 받음

### 집단현장체험학습

- 교과, 특별활동, 융통성 있는 운영 시간, 특기·적성교육(방과후 활동) 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되 집중 또는 분산하여 운영한다.
- 학습대상은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소그룹, 학급, 학급연합, 학년, 학년연합, 학교 단위로 조정 운영한다.
- 활동장소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교,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되 일부 장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지역사회 각종 시설, 문화재, 유적지, 산업체, 폐교시설, 수련원 등 활용
- 학생들에게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다.
- 학습현장에서 질서교육과 환경보전 교육을 병행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기르도록 한다.

- 사전·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며 특히 사후에 감상문, 관찰기록물, 참관 소감록, 학습지 등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한다.
- 도·농간 교류학습 추진을 위해 도·농간 학교 간 자매학교 결연 및 체험학습 추진기간을 설정한다.
-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교사(자원봉사 인력, 학부모 명예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지역 실정, 학생·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연간 지도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 학생들의 개성, 흥미, 능력을 존중하며 즐겁게 참여하도록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요구 내용을 선정, 특별 지도할 수 있다(해양탐구활동 등)

### 학급단위 가족체험 활동 활성화

- 학급별로 관련 교과 및 별도 시간을 활용하여 테마별 사이버 체험 실시
- 실제체험을 유도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학급체험활동의 포트폴리오 자료는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안내

## 5. 세부 추진 계획

### 체험학습을 통한 산지식 습득

- 학생종합수련원 활용 교육 강화 : 초·중등
  - 해양탐구수련원, 국화리학생야영장, 서사체험학습장 등 활용
  - 가족공동해양탐사대회 개최

- 갯벌 체험학습
- 폐교시설을 이용한 현장체험 학습 : 초·중등
  - 홍왕체험학습장
  - 기타 강화지역의 폐교시설
- 병영체험학습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 : 중등
  - 강화 지역의 군부대 협조
- 강화지역 전적지를 활용한 국난극복 체험학습
- 「모험심 기르기」, 「협동심 기르기」, 「극기심」, 「호연지기」 프로그램 운용

###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 실시

- 인천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 전개
  - 쓰레기 매립장, 송기수질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 견학
  -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 갯벌 체험학습

### 집단 체험학습 실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집단 체험학습 전개
  - 「우리 고장 산·들·바다 사랑」 체험학습 학교급별 실시
- 교과별 필요한 시간 확보하여 국내 필요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담임교사의 계획에 의거 학교장 허가로 체험학습 실시

### 도·농·어촌간 학생교류 체험활동 기회 확대

- 공동체험을 통한 도·농간의 문화적 특성 이해

- 체험과 축제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개별위탁, 가족동반, 집단체험 활동 등 실시

## 6. 체험학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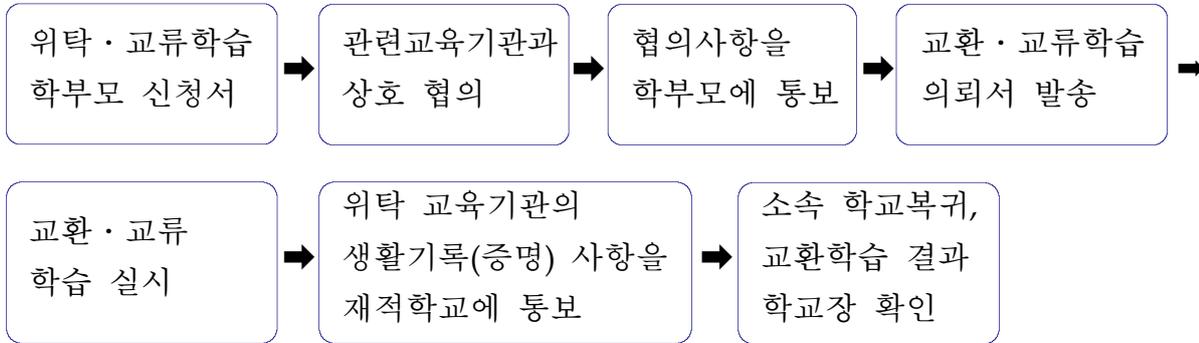
### □ 유형별 실시

구분	기간	장소	시행 방법
위탁교류 체험학습	1개월 이내	협력 학교, 자매결연 학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학교 선정은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li> <li>· 학교장은 현지 학교장에게 교환학습 의뢰</li> <li>· 현지학교장으로부터 교환학습 상황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li> <li>· 영어마을 참가 학생은 위탁 교류 체험 학습으로 출석인정(초등)</li> <li>-모든행정절차는 입소공문으로대치</li> </ul>
가족동반 체험학습	1주일 이내	국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li> </ul>
집단현장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별로 필요한 시간 확보</li> <li>· 융통성 있는 운영 시간과 연계</li> <li>· 특기·적성 교육시간은 필요에 따라 확보</li> </ul>	국내 필요 현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담당교사가 계획하고 학교장이 허가한 형태의 현장체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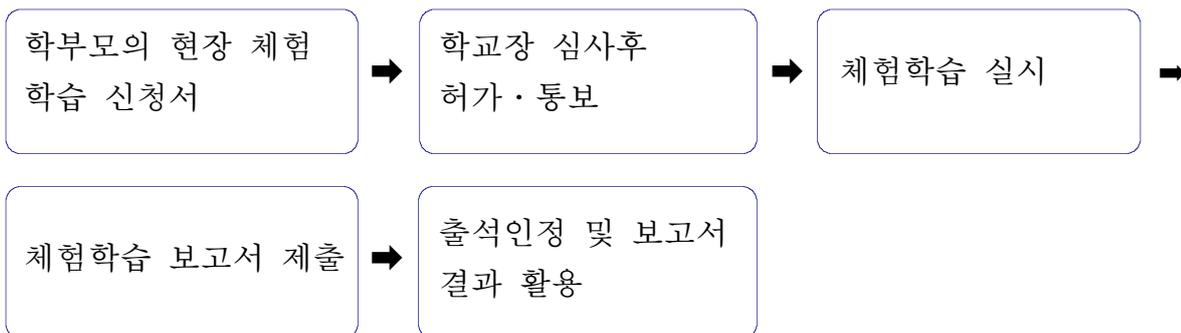
※ 체험학습 기간은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방침(규정)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함.

##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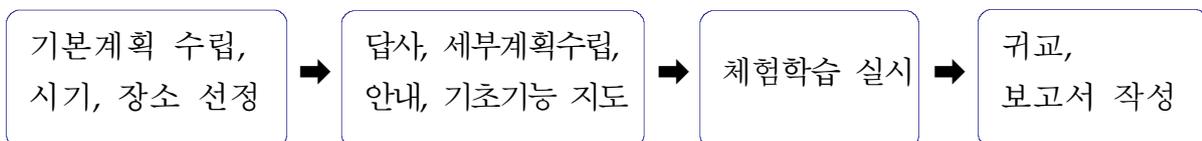
### ○ 위탁·교류 체험학습



### ○ 가족 동반 체험학습



### ○ 집단 현장 체험학습



## 집단 현장 체험학습 단계별 지도과정

과정	단 계	주요 활동 내용	유의점 및 자료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안내	○ 현장체험학습 실시 안내	○ 가정통신문
	주제 선정	○ 학생의 희망, 학부모 의사 고려 ○ 교과협의회 및 동학년 협의회 실시 ○ 학습주제 선정 -장소 선정과 일정 계획 수립 -사전 조사 및 답사	
	계획 수립	○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 사전지도안 작성 ○ 기관방문, 활동지역의 협조 의뢰서 발송	○ 개인별 현장체험 학습 계획 ○ 안전보험 가입
	학습지제시	○ 현장체험학습 지도안 및 학습지 제시 ○ 평가 관점 제시 ○ 교환학습 의뢰서 발송	○ 서식 작성 활용
본시 지도 단계	현장체험 학습활동	○ 현장체험학습 실시 ○ 개별 단위 : 가족, 보호자, 관련 지도자 ○ 집단 단위 : 담당교사, 학부모, 자원인사, 지역주민	○ 교통안전 지도 ○ 민원 발생 소지 억제

### 사전 지도의 중점사항

체험학습에 필요한 기초기능, 안전생활을 위한 기초체력 보강, 자매결연 가정에서의 예절생활과 새로운 친구와의 친교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환경보호 등을 집중 지도한다.

### 체험학습 활동영역

※ 학년발달 단계에 맞도록 활동내용을 선정한다.

활동영역	활 동 내 용
관찰활동	○ 관찰 활동을 통하여 동식물이 사람과 변화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 생김새 관찰</li> <li>▫ 나무의 종류 관찰</li> <li>▫ 식물채집</li> </ul>
실험활동	○ 실험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원리, 법칙,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기구 조작 기능</li> </ul>

수집활동	○수집 활동을 통하여 조상들의 생활모습과 자기 고장의 사정을 알게한다. ◦조상들의 얼과 생활모습 ◦우리고장의 특산물
조사활동	○조사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현상과 변화를 알게 한다. ◦연못에 사는 동식물 ◦날씨조사 ◦기온의 변화 조사
노작활동	○노작 활동을 통하여 근로의 소중함을 알도록 한다. ◦근로의 소중함과 보람 ◦일에 대한 자신감
체육활동	○체육 활동을 통하여 운동정신을 기르고 신체 발달을 도모한다. ◦신체의 유연성 ◦건전한 생활태도 ◦민속놀이
학예활동	○학예 활동을 통하여 언어, 미술, 음악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킨다. ◦자기 소질 계발 ◦발표력, 표현력 ◦악기 다루는 능력 ◦글짓기
토론활동	○토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유를 들어 말하기 ◦남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차례를 지켜 말하기
협회 활동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의사 결정 과정과 민주적인 협의 능력을 기른다. ◦자기 표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수결에 따르는 태도
역할 분담활동	○할일 분담 활동을 통하여 학급 일에 솔선 수범하는 태도를 기른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 ◦학급 일감 선정과 방법 ◦자율적 생활 태도
여가활동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도록 한다. ◦즐겁고 보람된 생활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건전한 생활 태도
취미활동	○취미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취미와 소질을 알고 노력하도록 한다. ◦소질과 적성 발견과 건전한 취미 선택 ◦다양한 경험 제공
견학활동	○견학 활동을 통하여 자기 고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고장의 기관과 문화재 ◦현장학습 ◦현장견학 학습이 유의적 지도
행사활동	○행사 활동을 통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학교, 향토, 국가 사랑에 노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적극적인 참여 의식 ◦학교 사랑하는 마음과 잘 가꾸려는 태도
극기활동	○극기 수련 활동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을 기른다. ◦튼튼한 몸 ◦인내심 ◦끈기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사명감, 준법정신을 기른다. ◦협동단결 ◦봉사 ◦규칙 준수
충효활동	○국혼을 심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나라사랑, 효도와 예의, 민족의 우수성을 알도록 한다. ◦나의 뿌리, 나와 친척과의 관계 ◦조상의 훌륭한 점
애향활동	○애향 활동을 통하여 향토 탐구와 사랑의 정신을 갖도록 한다. ◦우리 고장 알기 ◦우리 마을 가꾸기 ◦마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 보존활동	○환경보존 활동을 통하여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버리지 않는 습관 ◦재활용품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과 실천
경제 교육활동	○경제 교육 활동을 통하여 근검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 우리 생산물을 애호하며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자기 물건 잘 간수하기 ◦절약, 저축

## 7. 체험활동 결과 처리

### 집단 현장 체험학습 후 반성

- 체험활동 후에는 학년·학급별로 반성 협의회를 갖는다.
- 문제점 추출 및 보완
- 다음 활동 시 반영

### 평가 및 일반화

- 고사기간에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처리)
- 학년·학급별로 발표회(전시회) 또는 자체 평가를 갖는다.
- 우수 실천 사례는 홍보하고 다른 학교에 과급되도록 한다.
  - 학교별 사례집 발간, 학교소식지·가정통신 등에 게재 (권장)
  - 우수 사례는 교육청에 자료 제출 (사진 자료 첨부) (권장)

## 8. 행정 사항

### 학교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학교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각종 양식 비치 활용(학교별 작성)
- 비치 서류 종류(예시)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학부모 작성 →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
  - 현장체험학습 승인서 (학교승인 → 학부모에게 통보)
  - 위탁·교류 체험학습 의뢰서(학교 → 위탁교육기관)

- 현장체험 학습결과 보고서 (학생용 학습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위탁·교류 체험학습 결과 통지서 (위탁·교류 교육기관→ 학교통보)
- 현장체험학습 관리 대장 또는 현장체험학습 현황 대장
  - 신청서 제출 후 결재과정, 학년별로(학교) 관리, 담당(담임)교사 작성 후 결재
-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출결 관리 규정 제정 시행(학교별 제정)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함(사전 예방 교육 강조)**

## 참고자료 1

### 【교외현장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국외여행 포함)의 관계법규 및 공문서】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867호)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해당 학교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여부와 그 기준 등은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719호) 참고

참고자료2 (각종 양식)

##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소 속	학생명	성별	보호자명	담임교사	연락 전화
인천○○학교 계 학년 반				인	집☎ : 기타☎ :
현 장 체 험 학 습					
체험학습형태	위탁·교류 체험학습(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체험목표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 동 계 획 및 내 용					
일 정	장 소	활 동 내 용			비 고
협력학교	학 교 명			전화	
				( )-( )-( )	
	학 교 주 소				
	연 락 처	집 ☎ : 기타 ☎ :			

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 생

인

학부모

인

인천                      학교장      귀하

## 현장 체험학습 승인서

성명		소속	인천○○학교 제    학년    반
활동 장소 및 주소			
기간	.    .    부터    .    .    까지		
체험학습의 형태	개별위탁 체험학습 (    ) 가족동반 체험학습 (    )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학 교 장

## 위탁 · 교류 체험학습 의뢰서

수신 : (지역명 :        ) (                    )학교장

참조 : 교무부장

다음의 학생은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귀교에 위탁하여  
교육시키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학생명	보호자명	보호자 전화	학교 전화	담임 교사명
인천○○학교 제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관    계	(    )-  -	교무실 :  전송 :	
숙박 방법 또는 숙박지					
현지 보호자명 및 연락전화					
위탁 교육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체험학습 요청사항					

- ◎ 붙임 가.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1부.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학교장 승인서 1부.  
           라.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 1부.  
           마. 위탁교육결과 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학교장**

## 현장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소속	인천○○학교	학년반	학년	반	학생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성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 시)					
활동 장소						
체 험 학 습 내 용 및 결 과						

- 일정별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 자료를 모아오거나 사진을 덧붙여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 보고서는 활동장소, 주제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체험학습지와 함께 제출)
- 보고서의 양식은 창의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업무 도움 자료**



### 1-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법적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1-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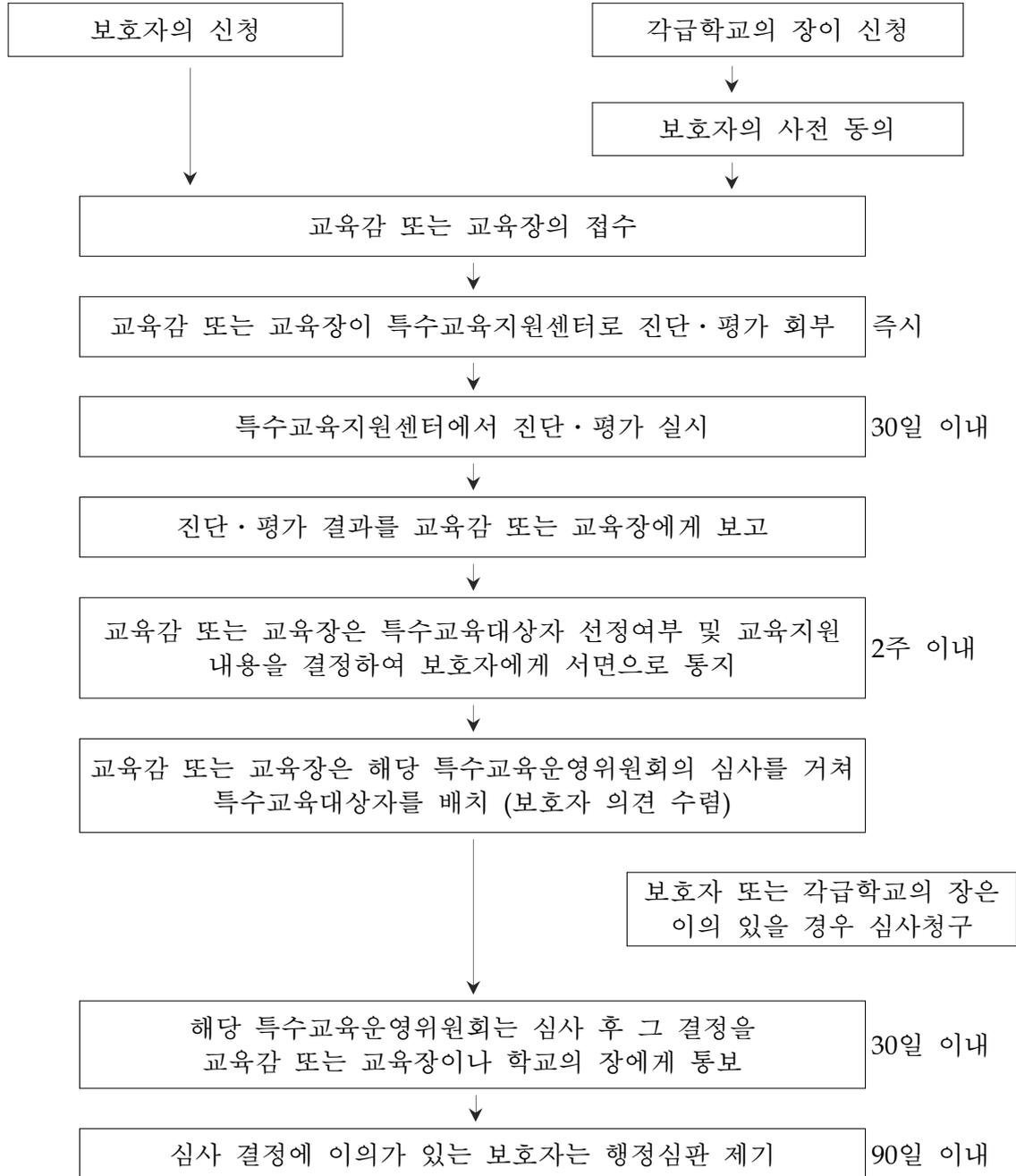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선정기준
1.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인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 분		영 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

배정학교

학교 제 학년 ( )학급

성 명 : 성별 ( )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 서명(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

## 학 교 장 의 견 서

대상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 학교	학 교 제 학년 반 (재학·졸업)				
	배치 희망학교					
장애영역				장애등급		
학교장 의견	<p>* 학생의 학교생활과 행동특성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을 기록</p>					
<p>위 학생은 위와 같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학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 통합학급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 제1조 정의

- 가.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일반학급
- 나. 통합학급담당교사 : 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하여 일반학생들과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일반학급의 담임교사
- 다.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각호의 장애로(특수교육진흥법 폐지로 수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지역교육청)의 심사·선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를 받은 학생

### 제2조 배치 장소 및 구비서류

- 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 나. 대상자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부

### 제3조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역할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 및 배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의 순서로 하며 선 순위자가 담당을 포기하는(포기서 비치) 차 순위자로 하여금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가.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나. 교육대학원(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전공)과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 특수학급 담임 및 특수학교 근무 경력자 (다 경력자 우선)
- 라.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자
- 마. 당해 연도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
  - ①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
  - ② 당해연도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의무 이행서 작성 비치
  - ③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의 의무 추진
  - ④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에 대한 학교 자율연수비 우선 지원
- 바. 통합학급 담임 경력자 ( 다 경력자 우선순)
- 사. 위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특수교육진흥법 폐지로 수정)과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5조 통합학급 학생 배치 기준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통합학급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교육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 유의 사항

- 가. 통합학급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률적으로 분산·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교사의 불만 및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적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수교사가 포함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배치하되 통합학급의 학생정원을 다른 학급보다 감축하여 배치한다.
- 다. 기타 특수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반 사항

## 제6조 통합학급 담당자의 가산점(2001. 12. 24 개정)

- 가. 근 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17292호, 2001. 7. 7) 제41조
- 나. 가산점 : 월 0.0053점, 상한점 1.25
- 다. 경력인정의 제한 :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선택가산점)②항  
- 동일한 평정기간 중 아래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 3. 보직교사 경력과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
- 6. 도서벽지 학교와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
- 7. 한센병 환자 및 자녀 담당경력과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
- 10. 농어촌학교 근무경력과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
- 11.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과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

## 제7조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임무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지도 결과물을 비치하여 학교장 및 장학지도 시 확인을 받는다.
-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월 1회 이상의 협의를 실시한다.

## 제8조 기타 사항

- 가. 본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지침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각급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손잡이	경사로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 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각급학교 (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	-	의무	의무	의무	-	권장	권장	-	권장	

\*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별표2)

### ■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개요

- 1. 주출입구 접근로** : 외부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을 잘 갖춘 접근로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유효폭 : 120cm 이상, 경사 : 1/18 이하
-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 제19조 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시설면적 300㎡당)  
→ 주차구역 폭 : 330cm 이상, 유도표시 및 주차구역 안내를 바닥면과 전면에 입식으로 표시
- 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단,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음  
→ 경사로의 폭 : 120cm 이상, 경사로 기울기 : 1/18 이하
-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 경우

→ 주출입구 유효폭 : 120cm, 주출입구 문 구조 : 가능한 자동문

5. **장애인 증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한 복도 · 벽면 : 핸드레일 설치(높이 84.5 - 85.5cm, 레일 직경 : 3.2cm - 3.8cm)
  6.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한 경우
  7.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한 남자용 및 여자용에 각 1개씩 설치한 화장실  
→ 출입문 외부공간 : 140cm×140cm,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 80cm이상, 소변기 주변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 설치 : 바닥면에서 높이 80cm, 수직손잡이 : 높이 110cm내외에 수평으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부착, 바닥재질 : 미끄럼방지 재질, 대변기 : 양변기, 좌대의 높이 : 40~45cm, 대변기 주변 손잡이 설치 : 높이 70cm, 대변기의 고정 손잡이 : 변기중심에서 45cm 측면설치, 세면대 설치 : 85cm이하(학교과정별 조정), 화장실 보조의자 설치 : 접이식, 벽면식, 수납형 보조의자 설치
  8. **점자블럭** :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점자블럭 설치  
→ 색상 : 황색계열, 크기 : 30cm x 30cm, 형태 : 선형블럭가 돌출점, 설치장소 : 통행로, 자동문, 여닫이문, 계단, 승강기에 설치
  9. **유도 및 안내설비** :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판 또는 기타 유도 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10. **경보 및 피난설비**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11. **관람석/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관람석 : 전체의 1% 휠체어 사용자용(폭 90cm, 깊이 130cm 이상), 통로 : 120cm이상, 필요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12. **접수대/작업대**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  
→ 높이 70cm이상, 75cm이하
- \*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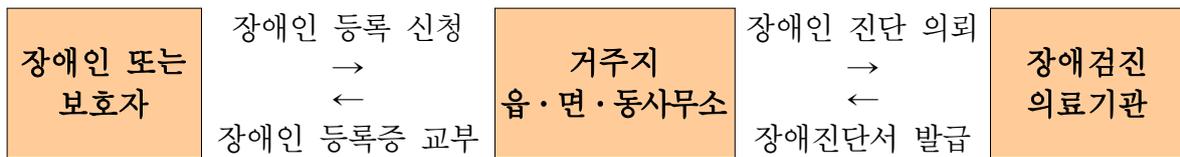
## ■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예시)

유 형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
시각장애이용 보조기구	독서확대기, 점자나 오디오북, 음성 출력 프로그램, 케인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적 정보를 확대하거나 시각적 정보를 청각이나 촉각으로 대체하여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구	후두장애인 의사소통기구, 타이핑 의사소통기구, 녹음·출력형 의사소통기구, 상징·의사소통판 등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현하도록 고안된 기구
이동 보조기구	목발, 지팡이, 워커, 전동휠체어 등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기구
일상생활 보조기구	손잡이 보조기구, 각종 식사도구(굽은 숟가락, 포크 등) 각종 집게, 필기보조도구, 일상생활동작(착탈의, 식사, 화장실사용, 세면, 목욕 등)동작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 이를 보완·대체해 줄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
착석 및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형 착석장치, 스탠딩 테이블, 자세유지 기구, 착석 보조기구, 조절 가능 의자, 장애인의 운동범위 유지, 자세의 안정성 증가, 자신감 획득을 위해 고안된 기구
청각장애이용 보조기구	보청기, 전화증폭기, 골도전화기, 불빛이 나오는 벨 등 청각장애인들이 시각이나 촉각의 형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구
컴퓨터 보조기구	입으로 하는 조이스틱 마우스, 롤러 조이스틱, 뇌파 마우스, 한 손 사용자용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체 방법을 통해 컴퓨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구

### ■ 등록 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 등록 절차



### ■ 신청 및 진단

-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사진 3매 구비)
- 진단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진단 비용 무료 (검사비용 본인 부담)

